

계량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 2020. 1. 1.] [산업통상자원부령 제336호, 2019. 5. 28., 일부개정]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 계량측정제도과) 043-870-5512

-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계량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비법정단위의 표시 등)** 「계량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3항에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표시요건을 만족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 1. 비법정단위 사용을 일러두기로 표시하는 경우
 - 2. 법 제5조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고시한 기준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인정한 경우
- 제3조(법정단위의 표시명령 등) ① 국가기술표준원장 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이하 "시장・군수·구청장"이라 한다)은 법 제6조제4항에 따라 비법정단위를 표시한 자에게 법정 단위의 표시를 명할 때에는 위반 사유와 법정단위의 표시내용을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알려야 한다. 이 경우 표시명령의 이행에 필요한 기간 등을 고려하여 3개월의 범위에서 이행 기간을 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9. 5. 28 >
 - ② 법 제6조제5항에 따라 표시명령을 받은 자는 정해진 기간 내에 해당 명령을 이행하고 그 결과를 국가기술표 준원장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19. 5. 28.>
- **제4조(계량증명서)**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계량증명업의 등록을 한 자(이하 "계량증명업자"라 한다)가 발급하는 계량증명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1. 계량을 요청한 자의 성명 또는 업체명
 - 2. 계량 일자
 - 3. 품명(계량대상물건이 차량에 적재된 경우에는 그 차량번호를 포함한다)
 - 4. 증명사항(실제중량 및 총중량)
 - 5. 계량증명업자의 업체명, 주소 및 연락처
- **제5조(등록신청서)** 「계량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조제1항에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등록신청서"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등록신청서를 말한다.
- 제6조(등록증의 발급) 영 제4조제4항에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계량기 제조업·수리업·계량증명업 등록증"이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등록증을 말한다.
- 제7조(변경등록) 법 제7조제4항에 따라 변경등록을 하려는 경우에는 등록사항의 변경이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3호서식의 계량기 제조업·수리업·계량증명업 등록사항 변경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첨부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9. 5. 28.>
- 제8조(자체수리자 지정의 신청) ① 법 제8조제2항에 따라 자체수리자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4호서식의 계량 기 자체수리자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9. 5. 28.>

법제처 1 국가법령정보센터

- 1. 자체시설명세서
- 2. 검사설비명세서
- ② 제1항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받은 시장·군수·구청장은「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거나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사본을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개정 2019. 5. 28.>
- 1.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 2. 사업자등록증
- 제9조(자체수리자 지정증의 발급 등) ① 시장·군수·구청장은 자체수리자로 지정받으려는 자가 법 제8조제2항에 따른 지정기준을 갖춘 경우 별지 제5호서식의 계량기 자체수리자 지정증을 신청인에게 발급(정보통신망에 의한 발급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여야 한다. <개정 2019. 5. 28.>
 - ② 법 제8조제4항에 따라 변경신고를 하려는 경우에는 지정사항의 변경이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 3호서식의 자체수리자 지정사항 변경신고서에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9. 5. 28.>
- 제10조(수입업의 신고) ①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수입업 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6호서식의 계량기 수입업 신고를 작성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9. 5. 28.>
 - ② 제1항에 따라 신고서를 제출받은 시장·군수·구청장은 「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거나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사본을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개정 2019. 5. 28.>
 - 1.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 2. 사업자등록증
- 제11조(신고확인증의 발급 등) ①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0조제1항에 따라 수입업을 신고한 자에게 별지 제7호 서식의 계량기 수입업신고확인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9. 5. 28.>
 - ② 법 제9조제2항에 따라 변경신고를 하려는 경우에는 신고사항의 변경이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 3호서식의 계량기 수입업 신고사항 변경신고서에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9. 5. 28.>
- 제12조(계량기사업자 대장) 영 제7조제1항에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계량기사업자 대장"이란 별지 제 8호서식에 따른 대장을 말한다.
- 제13조(폐업 등의 신고서) ①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제조업자등의 폐업・휴업 또는 휴업한 사업을 다시 시작하는 경우에 관한 신고는 별지 제9호서식의 폐업・휴업・휴업재개 신고서에 따른다. <개정 2017. 9. 22.>
 - ②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폐업신고를 하려는 자가「부가가치세법」제8조제7항에 따른 폐업신고를 같이 하려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폐업신고서에「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별지 제9호서식의 폐업신고서를 함께 제출하거나「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제10항에 따른 통합 폐업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은 함께 제출받은 폐업신고서 또는 통합 폐업신고서를 지체 없이 관할 세무서장에게 송부(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송부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여야 한다. <신설 2017. 9. 22., 2019. 5. 28.>
 - ③ 관할 세무서장이「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13조제5항에 따라 제1항에 따른 폐업신고서를 받아 이를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송부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폐업신고서가 제출된 것으로 본다.<신설 2017. 9. 22.>

법제처 2 국가법령정보센터

- 제14조(계량기 형식승인의 신청)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계량기의 형식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0호서식의 형식승인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 및 시험용 계량기를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형식승인기관(이하 "형식승인 기관"이라 한다)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1. 계량기의 사용설명서
 - 2. 계량기의 분해조립도
 - 3. 각 부분의 회로도 및 부품목록
 - 4. 계량기의 봉인방법 및 관련 도면
 - 5. 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형식승인의 기준(이하 "형식승인기준"이라 한다)에 따라 형식승인 신청 시 제출하도록 정한 서류
- **제15조(형식승인서의 발급)** ① 형식승인기관의 장은 형식승인을 신청한 계량기가 형식승인기준에 적합한 경우 별지 제11호서식의 형식승인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 ② 형식승인기관의 장은 형식승인기준에 부적합한 계량기에 대해서는 시험성적서 및 부적합 사유를 신청인에 게 통보하여야 한다.
 - ③ 제1항에 따라 형식승인서를 발급받은 자는 형식승인서의 기재사항이 변경된 경우 그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12호서식의 형식승인서 기재사항 변경신청서에 변경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형식승인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16조(형식승인기준의 제정 및 개정) ① 계량기를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자, 형식승인기관의 장 및 계량기에 관하여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 형식승인기준의 제정이나 개정을 신청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라 신청을 받은 국가기술표준원장은 신청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형식승인기준의 제정이나 개정 추진 여부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③ 국가기술표준원장은 영 제12조에 따른 기술전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형식승인기준을 정한다. 이 경우 국가기술표준원장은 기술전문위원회가 심의한 내용을 신청인과 형식승인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제17조(형식승인 면제의 방법)** 법 제15조에 따라 형식승인기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받으려는 자는 제14조 각호의 서류 및 다음 각호의 서류를 형식승인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1. 법 제15조제1항제1호에 따른 형식승인서 및 시험성적서
 - 2. 법 제15조제1항제2호에 따른 제품인증서 및 시험성적서
- 제18조(형식승인기관 지정의 신청) ①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형식승인기관으로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 13호서식의 형식승인기관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1. 법인의 정관 또는 단체의 규약
 - 2. 형식승인을 위한 조직 인력현황 및 시험설비 등을 기재한 사업계획서
 - ② 제1항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받은 국가기술표준원장은 「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 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거나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사본을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 1.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 2. 사업자등록증
 -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형식승인기관 지정 및 사후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가기술표준원 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 제19조(형식승인기관 지정증의 발급) ① 국가기술표준원장은 제18조제1항에 따라 형식승인기관의 지정을 신청한 자를 형식승인기관으로 지정한 경우에는 별지 제14호서식의 형식승인기관 지정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법제처 3 국가법령정보센터

- ② 국가기술표준원장은 제1항에 따라 형식승인기관을 지정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
- 1. 형식승인기관의 명칭 및 주소
- 2. 지정일자 및 지정번호
- 3. 형식승인업무 수행범위
- ③ 형식승인기관의 장은 제2항제1호 또는 제3호의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이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15호서식의 형식승인기관 지정사항 변경신고서에 변경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19조의2(형식승인기관의 지정 취소 등 사실의 공고) 국가기술표준원장은 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형식승인기관의 지정을 취소하거나 업무정지를 명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7. 9. 22.]

제20조(형식승인번호의 표시 및 제거) 법 제20조에 따른 형식승인번호의 표시 및 제거방법은 별표 1과 같다.

- 제21조(형식승인의 변경절차) ① 형식승인을 받은 자가 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계량기의 계량성능에 영향을 미치는 구조변경 등을 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6호서식의 형식승인 변경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 및 시험용 계량기를 형식승인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1. 각 부분의 회로도 및 부품목록
 - 2. 계량기의 봉인방법 및 관련 도면
 - 3. 그 밖에 형식승인기준에 따라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
 - ② 형식승인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형식승인 변경을 신청한 계량기가 형식승인기준에 적합한 경우 형식승인번호를 변경하고 별지 제11호서식의 형식승인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계량기 형식승인의 변경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가기술표 준원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 제22조(제품결함의 시정방법) ① 제조업자·수리업자 또는 수입업자는 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결함이 있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시정조치계획을 수립하여 계량기 소유자에게 우편, 팩스 등의 방법으로 알려야 한다. 다만, 계량기 소유자의 소재를 파악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전국에 배포되는 1개 이상의 일간신문에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 1. 대상 계량기
 - 2. 제품결함의 내용
 - 3. 시정조치의 방법
 - 4. 제품결함을 시정하지 아니한 경우 계량성능에 미치는 영향과 주의 사항
 - 5. 제품결함의 시정조치 기간, 시정 장소 및 제조업자・수리업자 또는 수입업자의 연락처
 - 6. 제품결함의 시정조치 비용에 관한 내용
 - 7. 제조업자·수리업자 또는 수입업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제품결함의 시정조치를 이행하지 못하는 경우의 보상계획 및 내용
 - 8. 그 밖에 제품결함의 시정을 위하여 국가기술표준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② 제품결함을 시정받으려는 계량기 소유자는 제1항제5호에 따른 시정조치 기간에 제조업자·수리업자 또는 수입업자에게 제품결함의 시정을 요구하여야 하며, 시정을 요구받은 제조업자·수리업자 또는 수입업자는 지 체 없이 제품결함에 대한 시정조치를 하여야 한다.
 - ③ 국가기술표준원장은 법 제22조제2항에 따라 제조업자·수리업자 또는 수입업자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통지, 공고 또는 시정조치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에 대한 시정을 명하여야 한다.

법제처 4 국가법령정보센터

-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통지, 공고 및 시정조치 절차 등의 세부 내용은 국가기술표준원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 제23조(시정조치계획의 보고 등) ① 법 제22조제4항에 따라 제조업자·수리업자 또는 수입업자가 제품결함이 있는 계량기에 대하여 시정조치를 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시정조치계획을 제22조제1항에 따른 통지 또는 공고 5일 전까지 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1. 계량기의 명칭 및 형식승인번호
 - 2. 기물번호 및 제조일자
 - 3. 제품결함의 원인
 - 4. 제품결함이 있는 계량기의 제조 및 판매대수
 - 5. 제22조제1항에 따른 시정조치계획의 내용
 - 6. 신문공고 예정문(신문공고를 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 ② 제조업자 등은 시정조치 기간이 종료한 때에는 종료 후 20일 이내에 그 사실을 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제24조(검정·재검정의 신청) ① 법 제23조제1항 및 제24조제1항에 따라 계량기의 검정 또는 재검정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7호서식의 계량기 검정·재검정신청서와 그 계량기를 검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② 법 제25조제1항에 따라 수리한 계량기의 재검정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7호서식의 수리한 계량기 재검정 신청서와 그 계량기 및 수리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검정기관의 장 또는 법 제25조제1항제2호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이하 "검정기관등의 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9, 5, 28.>
 - ③ 검정기관등의 장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검정 또는 재검정을 신청한 계량기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계량기가 소재하고 있는 장소에서 검정 또는 재검정을 할 수 있다.<개정 2019. 5. 28.>
 - 1. 토지·건물 그 밖의 공작물에 부착되어 있는 경우
 - 2. 계량기를 이동하는 경우 파손되거나 정확도가 저하될 우려가 있는 경우
 - 3. 다수의 계량기가 동일하거나 인접한 장소에 있어 계량기의 소재지에서 검정 또는 재검정을 하는 것이 효율 적인 경우
- 제25조(검정기관 등의 지정의 신청) ① 법 제26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검정기관 또는 자체검정사업자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8호서식의 검정기관·자체검정사업자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1. 검정요원 및 검정설비 현황을 기재한 서류
 - 2. 법인의 정관 또는 단체의 규약(자체검정사업자인 경우에는 제외한다)
 - 3. 최근 2년간의 검정기관에서 발행한 검정결과를 기재한 서류(자체검정사업자인 경우에만 해당한다)
 - ② 제1항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받은 국가기술표준원장은 「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 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거나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사본을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 1.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 2. 사업자등록증
 -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검정기관 지정 및 사후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가기술표준원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 제26조(검정기관 지정증 등의 발급) ① 국가기술표준원장은 제25조제1항에 따라 검정기관 또는 자체검정사업자의 지정을 신청한 자를 검정기관 또는 자체검정사업자로 지정한 경우에는 별지 제19호서식의 검정기관・자체검정

법제처 5 국가법령정보센터

사업자 지정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 ② 국가기술표준원장은 제1항에 따라 검정기관 또는 자체검정사업자를 지정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
- 1. 검정기관 또는 자체검정사업자의 명칭 및 주소
- 2. 검정기관 또는 자체검정사업자의 지정일자 및 지정번호
- 3. 검정업무 수행범위
- ③ 검정기관의 장 또는 자체검정사업자의 장은 제2항제1호 또는 제3호의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이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15호서식의 검정기관·자체검정사업자 지정사항 변경신고서에 변경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27조(검정증인의 표시 및 봉인) 법 제29조제1항에 따라 계량기의 검정증인의 표시 및 봉인을 하여야 하는 계량 기는 별표 2와 같다.
- 제28조(정기검사의 공고 및 절차) ① 법 제30조제1항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이 정기검사를 실시하려는 때에는 정기검사를 실시하기 1개월 전에 검사 일시・구역 및 장소를 정하여 시・군・구(자치구를 말한다)의 게시판 또는 일간신문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9. 5. 28.>
 - ② 시장·군수·구청장(특별자치시장 및 특별자치도지사는 제외한다)은 제1항에 따라 정기검사의 공고를 한 때에는 정기검사를 시작하는 날 3일 전까지 관할구역 안의 정기검사 대상 계량기의 현황을 조사하여 별지 제 20호서식의 정기검사 계량기 수량조사 보고서를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9. 5. 28.>
 - ③ 시장·군수·구청장은 제24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계량기가 있는 장소에서 제 1항에 따른 정기검사를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계량기가 있는 장소에서 정기검사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 21호서식의 소재장소 정기검사신청서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9. 5. 28.>
- **제29조(정기검사의 면제)** 법 제30조제4항에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계량기"란 다음 각 호의 계량기를 말한다. <개정 2019. 5. 28.>
 - 1. 검정기관등의 장 또는 자체검정사업자에 의하여 정기검사일의 해당 연도 또는 전년도에 법 제23조제1항, 법 제24조제1항 또는 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검정 또는 재검정을 받은 계량기
 - 2. 판매 등을 위하여 보관, 진열 중인 계량기. 이 경우의 검사 기산일은 계량기의 소유주가 구입한 시점으로 한다
 - 3. 「국가표준기본법 시행령」제12조제2항에 따라 국가교정기관으로부터 교정을 받은 계량기. 다만, 정기검사일의 해당 연도 또는 전년도에 교정을 받은 것으로서 영 제32조에 따른 사용오차 이내에 있는 것이어야 한다
- 제30조(자체정기검사사업자 지정의 신청) ① 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자체정기검사사업자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22호서식의 자체정기검사사업자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9. 5. 28.>
 - 1. 검사요원 및 검사설비 현황을 기재한 서류
 - 2. 검사업무규정
 - ② 제1항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받은 시장·군수·구청장은 「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거나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사본을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개정 2019. 5. 28.>

법제처 6 국가법령정보센터

- 1.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 2. 사업자등록증
-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자체정기검사사업자 지정 및 사후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가기술 표준원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 제31조(자체정기검사사업자 지정증의 발급) ① 시장·군수·구청장은 제30조제1항에 따라 자체정기검사사업자의 지정을 신청한 자를 자체정기검사사업자로 지정한 경우에는 별지 제23호서식의 자체정기검사사업자 지정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9. 5. 28.>
 - ② 자체정기검사사업자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지정증의 기재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그 변경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15호서식의 자체정기검사사업자 지정사항 변경신고서에 변경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서류를 첨부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9. 5. 28.>
- 제32조(검사증인의 표시 및 제거) 법 제34조에 따른 검사증인의 표시 및 제거방법은 별표 3과 같다.
- 제33조(최대허용오차 등의 표시) ① 법 제38조에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 1. 최대허용오차
 - 2. 기호・상표 또는 업체명(수입하는 계량기의 경우에는 제조한 자의 상표 및 업체명을 포함한다)
 - 3. 제조・수입 또는 수리한 일자
 - 4. 품질보증기간
 - 5. 사용상의 주의사항
 - 6. 소비자의 상담을 위한 연락처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계량기에 직접 표시가 불가능한 것에는 그 포장에 최대허용오차 등을 표시할 수 있으며, 세부 내용은 계량기의 형식승인기준으로 정한다.
- 제34조(정량표시 위반의 시정절차 등) ① 국가기술표준원장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법 제42조제1항에 따라 정량표시 명령 또는 표시의 정정을 요구할 때에는 위반사유와 정량표시 명령 또는 표시의 정정 내용을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알려야 한다. 이 경우 이행에 필요한 기간 등을 고려하여 3개월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9. 5. 28.>
 - ② 제1항에 따라 정량표시 명령 또는 표시의 정정을 요구받은 자는 정해진 기간 내에 시정조치를 완료하고 법 제42조제2항에 따라 개선 결과를 국가기술표준원장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19. 5. 28.>
- 제35조(정량표시상품의 자기적합성선언 기준) ① 법 제43조제1항에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말한다.
 - 1. 자체정량관리시스템의 운영에 관한 기준
 - 2. 정량관리를 위한 조직 및 경영시스템에 관한 기준
 - 3. 정량관리를 위한 문서 및 기록의 관리에 관한 기준
 - 4. 자체검사 공정, 검사방법 및 검사설비에 관한 기준
 - 5. 포장공정의 관리에 관한 기준
 - 6. 부적합 공정에 대한 조치 및 예방조치에 관한 기준
 - ② 제1항에 따른 정량표시상품의 자기적합성선언 기준(이하 "자기적합성선언기준"이라 한다)에 관한 세부 내용은 국가기술표준원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법제처 7 국가법령정보센터

- 제36조(정량표시상품의 자기적합성선언 신청) 법 제43조제1항에 따라 정량표시상품이 자기적합성선언기준에 적합한지의 여부를 확인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24호서식의 정량표시상품 자기적합성선언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 및 시험용 정량표시상품을 법 제44조제1항에 따른 적합성확인기관(이하 "적합성확인기관"이라 한다)에 제출하여야 한다.
 - 1. 정량관리를 위한 조직의 구성도 및 인력현황
 - 2. 자체정량관리시스템 지침서
 - 3. 검사설비현황
 - 4. 자체검사성적서 또는 국가기술표준원장이 지정하는 정량검사기관의 검사성적서
 - 5. 최근 3개월의 포장공정관리 및 최근 3개월의 정량측정실시기록
- 제37조(자기적합성선언확인서의 발급) ① 적합성확인기관의 장은 제36조에 따라 신청된 정량표시상품이 자기적합성선언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확인된 경우에는 별지 제25호서식의 자기적합성선언확인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 ② 적합성확인기관의 장은 자기적합성선언 요건에 부적합한 상품에 대하여는 부적합 사유를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③ 제1항에 따라 자기적합성선언확인서를 발급 받은 자는 자기적합성선언확인서의 기재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그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26호서식의 자기적합성선언확인서 기재사항 변경신청서에 변경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적합성확인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38조(적합성확인기관 지정의 신청) ① 법 제44조제1항에 따라 적합성확인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 27호서식의 적합성확인기관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1. 적합성확인요원 및 설비 현황을 기재한 서류
 - 2. 적합성확인 수수료 및 비용에 관한 규정
 - ② 제1항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받은 국가기술표준원장은 「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 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거나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사본을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 1.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 2. 사업자등록증
 -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적합성확인기관 지정 및 사후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가기술표준 원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 제39조(적합성확인기관 지정증의 발급) ① 국가기술표준원장은 제38조제1항에 따라 적합성확인기관의 지정을 신청한 자를 적합성확인기관으로 지정한 경우에는 별지 제28호서식의 적합성확인기관 지정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 ② 국가기술표준원장은 제1항에 따라 적합성확인기관을 지정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
 - 1. 적합성확인기관의 명칭 및 주소
 - 2. 지정일자 및 지정번호
 - 3. 적합성확인업무 수행범위
 - ③ 적합성확인기관의 장은 제2항제1호 또는 제3호의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이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15호서식의 적합성확인기관 지정사항 변경신고서에 변경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국가기술표 준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40조(자기적합성선언의 표시) 법 제47조에 따른 자기적합성선언 표시방법은 별표 4와 같다.

- 제41조(자기적합성선언표시의 제거 및 보고) ① 적합성확인기관의 장은 법 제48조제1항에 따라 자기적합성선언표 시의 제거를 명할 때에는 위반사유와 시정내용을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알려야 한다. 이 경우 이행에 필요한 기간 등을 고려하여 3개월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정하여야 한다.
 - ② 법 제48조제2항에 따른 자기적합성선언표시의 제거명령을 받은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시정조치계획을 법 제48조제1항에 따른 제거명령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적합성확인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1. 명령 이행 책임자
 - 2. 자기적합성선언표시 제거 대상 상품 및 판매 수량
 - 3. 최초 이행일 및 완료 예정일
 - ③ 자기적합성선언표시의 제거명령을 받은 자는 시정조치 기간이 종료한 때에는 종료 후 30일 이내에 그 사실을 적합성확인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제42조(검사 결과의 보고 등) 법 제50조제1항에 따라 조사 업무를 실시한 계량검사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보고서를 국가기술표준원장 및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9. 5. 28.>
 - 1. 계량기의 훼손 · 조작 여부 확인 등 위반사항에 대한 검사 결과
 - 2. 유통 중인 계량기 또는 정량표시상품 등에 대한 시판품의 조사 결과

제43조(신분표시증표) 법 제50조제4항에 따른 계량검사공무원의 증표는 별지 제29호서식과 같다.

- 제44조(부정계량기에 대한 조치) ① 법 제52조제1항에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사용중지 표시증"은 별지 제30호서식의 사용중지 표시증을 말한다.
 - ② 시장·군수·구청장은 법 제52조제1항에 따라 검정증인 또는 검사증인의 표시를 제거하는 경우에는 검정 증인 또는 검사증인이 식별되지 아니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개정 2019. 5. 28.>
- **제45조(신분표시증표)** 법 제54조제3항에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증표"란 별지 제31호서식에 따른 증표를 말한다.
- 제46조(소비자감시원의 활동지원) ① 국가기술표준원장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소비자감시원의 활동지원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국가기술표준원장 및 시장·군수·구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9. 5. 28.>
 - ② 소비자감시원의 활동에 필요한 사항은 국가기술표준원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 제47조(과징금의 부과・징수 절차) ① 국가기술표준원장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법 제5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할 때에는 그 위반행위의 종류와 과징금의 금액을 명시하여 이를 납부할 것을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9. 5. 28.>
 - ② 제1항에 따라 통지를 받은 자는 20일 이내에 과징금을 국가기술표준원장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정하는 수납기관에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납부기한까지 과징금을 낼 수 없을 때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7일 이내에 납부하여야 한다.<개정 2019. 5. 28.>
 - ③ 제2항에 따라 과징금을 받은 수납기관은 그 납부자에게 영수증을 발급하고,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국가기술 표준원장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2019. 5. 28.>
 - ④ 과징금은 분할하여 납부할 수 없다.

법제처 9 국가법령정보센터

- **제48조(포상금 지급기준 등)** ① 법 제56조제1항에 따른 포상금의 지급 기준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준으로 한다. 이 경우 1인당 연간 지급되는 건수는 3건을 넘을 수 없다.
 - 1. 법 제35조제3호에 따른 변조된 계량기를 사용한 자를 신고한 자: 50만원 이하
 - 2. 법 제37조제3항에 따라 계량값을 조작할 목적으로 계량기를 변조한 자를 신고한 자: 100만원 이하
 - ② 제1항에 따른 포상금의 지급방법 및 절차에 관하여는 국가기술표준원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 **제49조(계량종합관리시스템의 구축・운영)** 영 제50조제2항에 따라 계량종합관리시스템 구축・운영업무를 위탁받은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업무규정을 정하여야 한다.
 - 1. 구축・운영하는 계량정보의 범위
 - 2. 운영요원 및 시스템 설비에 관한 사항
 - 3.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른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사항
 - 4. 계량종합관리시스템 구축・운영을 위한 예산에 관한 사항
- 제50조(계량정보의 자료제출 요청절차) 국가기술표준원장은 법 제62조제1항에 따라 계량정보의 자료제출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제출기한의 15일 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통보하여야 한다.
 - 1. 제출요청 사유
 - 2. 제출기한
 - 3. 제출요청 자료의 목록
 - 4. 제출방법
- 제51조(지위승계 절차) ① 법 제63조제2항에 따라 등록업자 등의 지위승계 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32호서식의 영업자 지위승계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국가기술표준원장 또는 시장・군수・구청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9. 5. 28.>
 - 1. 사업의 전부를 양도하는 경우: 양도・양수 계약서 사본 등 양도・양수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2. 상속의 경우: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제15조제1항에 따른 가족관계증명서와 상속 사실을 확인할수 있는 서류
 - 3. 합병의 경우: 합병계약서 사본 등 지위승계를 증명하는 서류
 - ②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국가기술표준원장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고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거나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사본을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개정 2019. 5. 28.>
 - 1.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된다)
 - 2. 사업자등록증
- 제52조(수수료 등) ① 법 제67조에 따른 수수료는 실비(實費) 등을 고려하여 국가기술표준원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수수료를 국가기관에 납부하는 때에는 수입인지로, 지방자치단체에 납부하는 때에는 그 지방 자치단체의 수입증지로, 형식승인기관 및 검정기관 등에 납부하는 때에는 현금으로 각각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기술표준원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형식승인기관 및 검정기관의 장은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전자 화폐・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이를 납부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19. 5. 28.>
- 제53조(수수료의 결정절차) ① 국가기술표준원장은 제52조제1항에 따라 수수료를 정하려는 경우에는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그 내용을 20일 이상 예고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그사유를 소명하고 10일 동안 예고할 수 있다.
 - ② 국가기술표준원장은 제1항에 따라 예고된 수수료에 대하여 의견을 제출한 자가 있는 경우 그 처리결과를 통지하여야 한다.

법제처 10 국가법령정보센터

③ 국가기술표준원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수수료를 정하였을 때에는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수수료 및 산정내용을 공개하여야 한다.

제54조(규제의 재검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 1. 제3조제2항에 따라 법정단위 표시명령에 따른 시정결과의 보고: 2015년 1월 1일
- 2. 제13조에 따른 제조업 등의 휴업ㆍ폐업 또는 휴업한 사업의 재개에 관한 신고방법: 2015년 1월 1일
- 3. 제22조에 따른 제품결함의 시정방법: 2015년 1월 1일
- 4. 제23조에 따른 제품결함 시정조치계획의 보고: 2015년 1월 1일
- 5. 제34조에 따른 정량표시 위반의 시정절차: 2015년 1월 1일
- 6. 제41조에 따라 자기적합성선언표시의 제거 명령에 따른 시정조치 계획 및 결과의 보고: 2015년 1월 1일
- 7. 제47조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 징수 절차: 2015년 1월 1일

법제처 11 국가법령정보센터



계량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23. 4. 19.] [대통령령 제33419호, 2023. 4. 18., 일부개정]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 계량측정제도과) 043-870-5512

제1조(목적) 이 영은 「계량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계량기의 정의 등) ① 「계량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법 제4조에 따른 기본단위·유도단위 또는 특수단위를 사용하여 계량하는 기계·기구 또는 장치를 말한다.
 - ② 법 제2조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품"이란 별표 1에 따른 상품을 말한다.

제3조(특수단위) 법 제4조제4항에 따른 특수단위 및 그 뜻은 별표 2와 같다.

- 제4조(계량기 제조업 등의 등록) ①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계량기 제조업, 계량기 수리업 또는 계량증명업을 하려는 자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등록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1. 자체시설명세서(계량증명업의 경우는 제외한다)
 - 2. 검사설비명세서(계량증명업의 경우는 제외한다)
 - 3. 계량기명세서(계량증명업인 경우만 해당한다)
 - ② 제1항에 따라 등록신청서를 제출받은 시·도지사는「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호의 서류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거나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사본을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 1.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에만 해당한다)
 - 2. 사업자등록증
 - ③ 법 제7조제2항에서 "계량기의 제조, 수리 및 증명에 필요한 자체 시설 및 검사설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등록기준"이란 별표 3에 따른 기준을 말한다.
 - ④ 시·도지사는 계량기 제조업, 계량기 수리업 또는 계량증명업을 하려는 자가 제3항에 따른 자체 시설 및 검사설비를 갖춘 경우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계량기 제조업·수리업·계량증명업 등록증을 신청인에게 발급(정보통신망에 의한 발급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 ⑤ 법 제7조제3항에 따른 계량기 수리업의 업무범위는 별표 4와 같다.
- 제5조(계량기의 자체수리) ① 법 제8조제2항에서 "계량기의 수리에 필요한 자체 시설 및 검사설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정기준"이란 별표 3에 따른 기준을 말한다.
 - ② 법 제8조제3항에 따른 자체수리의 업무범위는 별표 4와 같다.

제6조(수입업의 신고) 법 제9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신고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 1. 수입하는 계량기의 종류
- 2. 수입업자의 성명 또는 명칭 및 주소
- 3. 수입하는 계량기를 제조한 국가명, 제조한 업체의 명칭 및 주소
- 제7조(대장의 관리) ① 시·도지사는 법 제7조부터 제9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등록·지정 또는 신고를 받은 경우에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계량기사업자 대장을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계량기사업자 대장은 전자적 처리가 불가능한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전자적 방법에 의하여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법제처 1 국가법령정보센터

- **제8조(제조업자 등의 준수사항)** ① 법 제11조제1항에서 "해당 업무와 관련하여 금품을 주고 받는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정한 행위"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말한다.
 - 1. 계량기 또는 계량값을 조작하거나 조작에 도움을 주는 행위
 - 2. 형식승인 및 검정과 관련하여 시험 · 검정요원에게 금품을 주고받는 행위
 - 3. 계량증명과 관련하여 금품을 주고받는 행위
 - ② 법 제11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별표 5에 따른 기간을 말한다.

제9조(제조업자 등의 행정처분 기준)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세부기준은 별표 6과 같다.

제10조(형식승인의 대상) 법 제14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계량기"란 별표 7에 따른 계량기를 말한다.

- **제11조(형식승인의 기준)** ① 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형식승인의 기준(이하 "형식승인기준"이라 한다)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1. 구조 및 성능에 관한 사항
 - 2. 표시내용 및 표시방법 등에 관한 사항
 - 3. 시험방법 및 시험절차에 관한 사항
 - 4. 최대허용오차에 관한 사항
 - ② 형식승인기준의 세부 내용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 ③ 형식승인기준의 제정 및 개정 절차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한다.

제12조 삭제 <2022. 10. 4.>

- 제13조(형식승인기관의 지정기준) 법 제16조제2항제2호에 따라 형식승인기관으로 지정을 받으려는 자가 갖추어야하는 전담조직, 시험설비 등의 요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1. 형식승인업무를 수행하는 전담조직을 갖출 것
 - 2. 별표 8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험요원을 3명 이상 확보할 것
 - 3. 별표 9에 따른 시험설비를 갖출 것
- **제14조(형식승인기관의 준수사항)** ① 법 제17조제1항제2호에서 "형식승인과 관련하여 금품을 주고받는 등 대통령 령으로 정하는 부정한 행위"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말한다.
 - 1. 형식승인과 관련하여 금품을 주고받는 행위
 - 2. 형식승인 결과를 조작하는 행위
 - ② 법 제17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별표 10에 따른 기간을 말한다.

제15조(형식승인기관의 행정처분 기준) 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세부기준은 별표 11과 같다.

- 제16조(형식승인 취소의 기준 등) ①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형식승인 취소의 세부기준은 별표 12와 같다.
 - ② 형식승인기관의 장은 법 제19조에 따라 형식승인을 취소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확하게 적어 취소처분을 받는 자에게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알려야 한다.<개정 2021. 1. 5.>
- **제17조(형식승인의 변경)** ① 법 제21조제1항에서 "계량기의 계량성능에 영향을 미치는 구조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 1. 계량기의 계량성능에 영향을 미치는 설계 및 구조의 변경
 - 2. 계량기의 계량성능에 영향을 미치는 부품의 변경

법제처 2 국가법령정보센터

3. 계량기 봉인 구조의 변경

가. 사망

- ② 제1항에 따른 계량기별 형식승인 변경의 세부 내용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 제18조(중대한 결함의 기준) 법 제22조제1항에서 "계량기의 허용오차에 영향을 미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 대한 결함"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결함을 말한다.
 - 1. 설계, 조립 등 제조과정의 문제로 계량기의 허용오차에 영향을 미치는 결함
 - 2. 형식승인기준을 위반하여 계량기의 허용오차에 영향을 미치는 결함
 - 3. 계량기의 제조, 유통 또는 사용과 관련하여 통상적으로 기대할 수 있는 안전성이 결여되어 소비자에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해를 끼치거나 끼칠 우려가 있는 결함
 - 나.「의료법」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에서 4주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골절·질식·화상·감전 등 신체적 부 상이나 질병
 - 4. 화재를 일으키거나 일으킬 우려가 있는 결함
- **제19조(계량기의 수거 등에 사용되는 비용징수)** 법 제22조제3항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시정명령을 받은 자가 그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행정대집행법」에 따라 해당 계량기의 수거 등을 하고 그 비용을 징수할 수 있다.
- 제20조(검정·재검정의 기준) ① 법 제23조제2항, 제24조제2항 또는 제25조제2항에 따른 검정 또는 재검정의 기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1. 검정 재검정 검사 항목에 관한 사항
 - 2. 검정·재검정 방법 및 절차에 관한 사항
 - 3. 최대허용오차에 관한 사항
 - ② 제1항에 따른 검정 또는 재검정의 기준에 관한 세부 내용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 **제21조(검정·재검정의 유효기간)** 법 제23조제2항, 제24조제2항 및 제25조제3항에 따른 검정 및 재검정의 유효기 간은 별표 13과 같다.
- 제22조(재검정 대상 등) 법 제24조제1항에 따라 재검정을 받아야 하는 계량기와 해당 계량기의 재검정을 받아야하는 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9. 5. 28.>
 - 1. 전기 또는 열의 값을 결정하기 위한 계량기(수요자와의 계약에 따라 사업자가 관리하는 계량기만 해당한다): 「전기사업법」제2조제10호에 따른 전기판매사업자 또는「집단에너지사업법」제2조제3호에 따른 사업자
 - 1의2. 전기자동차에 충전하는 전기 값을 결정하기 위한 계량기: 「전기사업법」제2조제12호의5에 따른 전기자동차충전사업자
 - 2. 전기 또는 열 외의 값을 결정하기 위한 계량기: 해당 계량기를 거래 또는 증명에 사용하여 영업활동을 하는 자
- **제23조(재검정을 수행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요건)** 법 제25조제1항제2호에서 "검정요원, 검정설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각각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말한다.
 - 1. 별표 8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검정요원을 1명 이상 확보할 것
 - 2. 별표 9에 따른 검정설비를 갖출 것
- 제24조(검정기관 등의 지정기준) 법 제26조제2항제2호 및 같은 조 제3항제1호에서 "검정요원, 검정설비 등 대통령 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각각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말한다.

법제처 3 국가법령정보센터

- 1. 별표 8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검정요원을 1명 이상 확보할 것
- 2. 별표 9에 따른 검정설비를 갖출 것
- 제25조(검정기관 등의 준수사항) ① 법 제27조제1항제2호에서 "검정 업무와 관련하여 금품을 주고받는 등 대통령 령으로 정하는 부정한 행위"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말한다.
 - 1. 검정 업무와 관련하여 금품을 주고받는 행위
 - 2. 검정 결과를 조작하는 행위
 - ② 법 제27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별표 14에 따른 기간을 말한다.
- 제26조(검정기관 등의 행정처분 기준) 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세부기준은 별표 15와 같다.
- 제27조(정기검사 대상) 법 제30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계량기"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비자동(非自動)저울(상거래용에 사용되는 비자동저울에 한정한다)을 말한다. 다만, 최대용량이 10톤 이상인 비자동저울은 제외한다.
 - 1. 판수동(板手動) 저울
 - 2. 접시지시 및 판지시(板指示) 저울
 - 3. 전기식지시 저울
- 제28조(정기검사의 기준) ① 법 제30조제2항에 따른 정기검사의 기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1. 정기검사방법 및 절차에 관한 사항
 - 2. 사용오차에 관한 사항
 - ② 제1항에 따른 정기검사의 기준에 관한 세부 내용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 제29조(자체정기검사사업자의 지정기준) 법 제32조제2항에서 "검사요원, 검사설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 "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말한다.
 -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검사요원을 1명 이상 확보할 것
 - 가.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정밀측정기능사 이상의 자격을 갖춘 사람
 - 나. 「국가표준기본법 시행령」제12조제3항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고시한 질량분야 정밀측정 교육을 받은 사람
 - 2. 검사대상 비자동저울의 최대용량의 2분의 1 이상에 상당하는 조합분동을 갖출 것. 다만, 계약 체결 등의 방법으로 타인의 검사설비를 사용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3. 검사업무규정을 정할 것
- 제30조(자체정기검사사업자의 행정처분 기준) 법 제33조제1항에 따른 자체정기검사사업자 지정 취소의 세부기준은 별표 16과 같다.
- 제31조(양도 등의 제한의 예외) 법 제35조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질량이 1천밀리그램 이하의 선분동(線分銅
 -)・판상분동(板狀分銅)인 계량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계량기를 말한다.
 - 1. 질량이 1천밀리그램 이하의 선분동
 - 2. 질량이 1천밀리그램 이하의 판상분동
- 제32조(사용오차) 법 제37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용오차"란 별표 17에 따른 사용오차를 말한다.
- 제33조(교정대상 측정기기 등) 법 제39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정대상 측정기기" 및 같은 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정주기"란 별표 18에 따른 측정기기 및 교정주기를 말한다.

법제처 4 국가법령정보센터

- 제34조(교정·재교정의 기준) ① 법 제39조제3항에 따른 교정 및 재교정의 기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1. 교정ㆍ재교정 방법 및 절차
 - 2. 교정 장비의 종류 및 성능
 - ② 제1항에 따른 교정 및 재교정의 기준에 관한 세부 내용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 제35조(자율교정 측정기기 등) 법 제40조제1항에 따른 자율교정 측정기기의 종류 및 교정주기는 별표 19와 같다.
- 제36조(정량표시상품의 허용오차) 법 제41조제1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허용오차"란 별표 20에 따른 허용오차를 말한다.
- 제37조(정량의 표시방법 및 검사기준) ① 법 제41조제2항에 따른 정량의 표시방법은 별표 21과 같다.
 - ② 법 제41조제2항에 따른 정량의 검사기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1. 검사설비에 관한 사항
 - 2. 검사방법 및 검사절차에 관한 사항
 - 3. 시료채취에 관한 사항
 - 4. 오차의 계산방법 및 판정에 관한 사항
 - 5. 검사성적서의 작성에 관한 사항
 - ③ 제2항에 따른 정량의 검사기준에 관한 세부 내용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 제38조(적합성확인기관의 지정기준) 법 제44조제2항에 따른 적합성확인기관의 지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1. 계량에 관한 사항을 업무로 하는 법인일 것
 - 2. 별표 22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적합성확인요원을 1명 이상 확보할 것
 - 3. 별표 23에 따른 검사설비를 갖출 것
 - 4. 적합성확인 수수료 및 비용에 관한 규정을 정할 것
- 제39조(적합성확인기관의 준수사항) ① 법 제45조제1항제2호에서 "적합성확인과 관련하여 금품을 주고받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정한 행위"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말한다.
 - 1. 적합성확인과 관련하여 금품을 주고받는 행위
 - 2. 적합성확인 결과를 조작하는 행위
 - ② 법 제45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별표 24에 따른 기간을 말한다.
- 제40조(적합성확인기관의 행정처분 기준) 법 제46조제2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세부기준은 별표 25와 같다.
- 제41조(보고 사항) 법 제49조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비법정단위의 단속현황, 계량기 제조업 등록현황, 형식승인 및 검정 통계, 교정대상 측정기기 교정이력, 적합성 확인현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련 자료"란 별표 26에 따른 자료를 말한다.
- **제42조(위반사실 공표 내용 및 방법)** ① 법 제51조제1항에서 "위반행위와 관련된 사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내용"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항을 말한다.
 - 1. 법 제51조제1항제1호를 위반한 경우: 다음 각 목의 사항
 - 가. 결함이 발견된 계량기 및 결함의 내용
 - 나. 결함이 발견된 계량기의 제조업자・수리업자 또는 수입업자의 이름・명칭 및 주소
 - 다. 결함이 발견된 계량기의 수거 방법 및 기간

법제처 5 국가법령정보센터

- 2. 법 제51조제1항제2호를 위반한 경우: 다음 각 목의 사항
 - 가. 계량기를 변조하거나 변조된 계량기를 사용한 자의 성명 또는 업체명 및 주소
 - 나. 변조한 계량기 및 변조 내용
- ② 법 제51조에 따른 위반사실의 공표는 법 제61조제1항에 따른 계량종합관리시스템과 산업통상자원부 인터 넷 홈페이지에 게재하는 방법으로 공표하여야 하고, 그 밖에 일반인이 쉽게 알 수 있도록 관보,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문 또는 「방송법」에 따른 방송 등을 이용하여 공표할 수 있다.
- ③ 제2항에 따른 공표기간은 다음과 각 호와 같다.
- 1. 법 제51조제1항제1호를 위반한 경우: 법 제22조제2항에 따른 중대한 결함에 대한 시정조치 명령 시 정한 기 한의 5일이 경과한 날부터 시정조치를 완료한 날까지
- 2. 법 제51조제1항제2호를 위반한 경우: 법 제55조제2항에 따른 과징금을 부과한 날부터 1개월
- ④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법 제51조제1항에 따른 공표를 하기 전에 공표 대상자에게 소명자료를 제출하게 하거나 의견을 진술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한다.
- **제43조(소비자감시원의 직무)** 법 제54조제2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법 제22조에 따른 제품 결함의 시정조치 이행 여부 확인을 지원하는 업무를 말한다.
- **제44조(소비자감시원의 해촉사유)** 법 제54조제5항에서 "심신장애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를 말한다.
 - 1. 심신장애 등으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때
 - 2.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금품을 받았을 때
 - 3. 직무수행 결과를 허위로 보고한 때
 - 4. 법 제54조제4항에 따른 교육을 이수하지 아니한 때
- 제45조(과징금의 부과) ① 법 제5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위반행위의 종류 및 위반정도 등에 따른 과징금의 금액은 별표 27과 같다.
 -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및 시·도지사는 법 제55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는 경우 위반행위의 동기, 내용, 정도 및 횟수 등을 고려하여 제1항에 따른 금액의 2분의 1 범위에서 그 금액을 늘리거나 줄일 수있다. 다만, 늘리는 경우에도 과징금의 총액은 법 제5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개정 2019. 5. 28.>
 -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 및 징수에 관한 절차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한다.
- **제46조(시범사업의 실시)**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법 제58조제1항에 따른 시범사업을 실시하려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시범사업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 1. 시범사업의 목표・전략 및 추진체계에 관한 사항
 - 2. 시범사업에 적용될 계량 기술에 관한 사항
 - 3. 시범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재원 조달에 관한 사항
 -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법 제58조제1항에 따른 시범사업의 추진을 위하여 관련 시범사업의 사업자를 지정할 수 있다.
 - ③ 시범사업의 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 1. 시범사업의 목적 달성에 적합할 것
 - 2. 시범사업의 재원조달계획이 적정하고 실현 가능할 것
 - 3. 시범사업의 원활한 시행이 가능할 것

- ④ 시범사업의 사업자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사업의 목적, 내용, 필요성 및 예산 확보 방안 등이 포함된 사업계획서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47조(국제협력사업 지원 단체)** 법 제60조 각 호 외의 부분에서 "외국 정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단체"란 다음 각 호를 말한다.
 - 1. 외국 정부
 - 2. 계량 관련 국제기구
 - 3. 법 제16조에 따른 형식승인기관, 법 제26조에 따른 검정기관 및 법 제44조에 따른 적합성확인기관
 - 4. 법 제65조에 따른 한국계량측정협회
 - 5. 그 밖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국제협력사업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관
- **제48조(한국계량측정협회의 설립 등)** ① 법 제65조에 따른 한국계량측정협회(이하 "협회"라 한다)의 정관의 기재사 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1. 목적
 - 2. 명칭
 - 3. 주된 사무소 및 분사무소의 주소
 - 4. 임원 및 직원에 관한 사항
 - 5. 업무 및 그 집행에 관한 사항
 - 6. 회원의 가입 및 권리 · 의무에 관한 사항
 - 7. 자금의 조달 및 운영에 관한 사항
 - 8. 재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
 - 9. 총회 및 이사회에 관한 사항
 - 10. 공고에 관한 사항
 - 11.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법 제65조제2항에 따른 사업에 대하여 협회를 감독할 수 있다.
- 제49조(권한의 위임)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법 제68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국가기술표준원장에 게 위임한다. <개정 2019. 5. 28.>
 - 1. 법 제6조제4항에 따른 비법정단위 사용에 대한 단속 및 법정단위 표시의 명령
 - 1의2. 법 제6조제5항에 따른 결과보고의 접수
 - 2. 법 제1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형식승인기관의 지정 및 지정신청의 접수
 - 3. 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형식승인기관의 지정 취소 및 업무정지 명령
 - 3의2. 법 제20조제4항에 따른 형식승인번호의 삭제 또는 소인(消印)
 - 4. 법 제22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수거 등의 명령, 수거 등의 실시 및 수거 등 비용의 징수
 - 4의2. 법 제22조제4항에 따른 시정조치 계획과 진행상황 또는 그 결과 보고의 접수
 - 5. 법 제2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검정기관의 지정 및 지정신청의 접수
 - 6. 법 제26조제3항에 따른 자체검정사업자의 지정
 - 7. 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검정기관 또는 자체검정사업자의 지정 취소 및 업무정지 명령
 - 8. 법 제42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정량의 표시 명령, 표시의 정정 요구 및 개선 결과보고의 접수
 - 9. 법 제4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적합성확인기관의 지정 및 지정신청의 접수
 - 10. 법 제46조제1항에 따른 적합성확인기관의 지정 취소 및 업무정지명령
 - 11. 법 제48조제2항에 따른 표시제거의 계획 및 결과 보고의 접수

- 12. 법 제49조에 따른 비법정단위의 단속현황 등 자료 보고의 접수
- 13. 법 제50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조사 및 검사계획의 통지
- 14. 법 제51조제1항에 따른 위반사실의 공표
- 15. 법 제54조제1항・제3항 및 제5항에 따른 소비자감시원의 위촉, 비용 지원, 증표 발급 및 위촉의 해제
- 16. 법 제55조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 및 징수
- 17. 법 제56조제1항에 따른 신고포상금의 지급
- 18. 법 제57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계량 산업의 육성 지원을 위한 사업의 추진 및 관련 사업자 등에 대한 지원
- 19. 법 제58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시범사업의 실시 및 관련 사업자 등에 대한 지원
- 20. 법 제59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실태조사 및 자료제출 등의 요구
- 21. 법 제60조에 따른 국제협력사업의 지원
- 22. 법 제61조제2항에 따른 계량정보의 제공
- 23. 법 제62조제1항에 따른 계량정보의 요청
- 24. 법 제63조제3항에 따른 신고의 수리
- 25. 법 제66조제1항 각 호의 권한 중 위임된 권한에 관한 청문
- 26. 법 제76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 및 징수
- ② 시·도지사는 법 제68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에게 위임한다.<개정 2019. 5. 28.>
- 1. 법 제6조제4항에 따른 비법정단위 사용에 대한 단속 및 법정단위 표시의 명령
- 1의2. 법 제6조제5항에 따른 결과보고의 접수
- 2. 법 제7조제1항 및 제4항에 따른 계량기 제조업 등의 등록 및 변경신고의 처리
- 3. 법 제8조제1항 및 제4항에 따른 자체수리자의 지정 및 변경신고의 처리
- 4. 법 제9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수입업의 신고 및 변경신고의 처리
- 5.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폐업 등의 신고 수리
- 5의2. 법 제12조제6항에 따른 등록, 지정 또는 신고 사항의 말소
- 6.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등록ㆍ지정의 취소, 영업소의 폐쇄 또는 업무정지 명령
- 6의2. 법 제29조제1항・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검정증인(檢定證印)의 표시・제거 및 봉인
- 7. 법 제30조제1항 및 제4항에 따른 정기검사 및 그 면제
- 8. 법 제31조에 따른 수시검사
- 9. 법 제32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자체정기검사사업자의 지정 및 지정신청의 접수
- 10. 법 제33조제1항에 따른 자체정기검사사업자의 지정 취소
- 10의2. 법 제33조제2항에 따른 검사
- 10의3. 법 제3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검사증인(檢査證印)의 표시 및 제거
- 11. 법 제42조제1항에 따른 정량의 표시 명령, 표시의 정정 요구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개선 결과보고의 접수
- 12. 법 제50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조사 및 검사계획의 통지
- 13. 법 제52조제1항에 따른 검정증인 또는 검사증인 표시의 제거, 사용중지 표시증 부착 및 표시의 개선 명령
- 14. 법 제54조제1항・제3항 및 제5항에 따른 소비자감시원의 위촉, 비용 지원, 증표 발급 및 위촉의 해제
- 15. 법 제55조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 및 징수
- 16. 법 제56조제1항에 따른 신고포상금의 지급
- 17. 법 제63조제3항에 따른 신고의 수리

- 18. 법 제66조제2항의 권한 중 위임된 권한에 관한 청문
- 19. 법 제76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 및 징수
- 제50조(업무의 위탁)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및 시·도지사는 법 제69조제1항에 따라 법 제65조에 따른 한국계량 측정협회에 법 제54조제4항에 따른 소비자감시원 교육을 위탁할 수 있다.
 -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법 제69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법 제61조에 따른 계량정보의 종합관리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개정 2019. 5. 28.>
 - 1.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형식승인기관
 - 2. 법 제26조제1항에 따른 검정기관
 - 3. 법 제65조에 따른 한국계량측정협회
- 제51조(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제49조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의 권한을 위임받은 자를 포함한다)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제19조제1호, 제2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이하 이 조에서 "주민등록번호등"이라 한다)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 1. 법 제7조, 제8조 또는 제9조에 따른 제조업자 등의 등록・지정 또는 신고에 관한 업무
 - 2. 법 제10조에 따른 제조업 등록 등의 결격사유에 확인에 관한 업무
 - 3. 제44조에 따른 소비자감시원의 해촉사유 확인에 관한 업무
 - ② 법 제50조에 따른 조사 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은 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주민등록번호 등이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 제52조(규제의 재검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21조 및 별표 13에 따른 계량기 검정·재검정의 유효기간에 대하여 2015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전문개정 2021. 3. 2.]

제53조(과태료의 부과) 법 제7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28과 같다.

법제처 9 국가법령정보센터



계량에 관한 법률

[시행 2023. 4. 19.] [법률 제18997호, 2022. 10. 18., 일부개정]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 계량측정제도과) 043-870-5512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계량의 기준을 정하여 계량을 적정하게 함으로써 공정한 상거래 질서를 유지하고, 산업의 선진화 및 국민경제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1. "계량"이란 상거래 또는 증명에 사용하기 위하여 어떤 양의 값을 결정하기 위한 일련의 작업을 말한다.
- 2. "계량기"란 계량을 하기 위한 기계 기구 또는 장치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 3. "정량표시상품"이란 제4조에 따른 법정단위인 길이, 질량, 부피, 면적과 개수[이하 "정량"(定量)이라 한다]로 표시된 상품 중 용기나 포장을 개봉하지 아니하고는 양을 증감할 수 없게 한 것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품을 말한다.
- **제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계량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서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4조(법정단위) ① 법정단위는 기본단위, 유도단위 및 특수단위로 구분한다.
 - ② 기본단위는 「국가표준기본법」 제10조에 따른다.
 - ③ 유도단위는 「국가표준기본법」제11조에 따른다.
 - ④ 특수단위는 특수한 계량의 용도에 쓰이는 단위로서 그 단위와 뜻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5조(법정단위의 기준 마련)**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4조에 따른 법정단위의 올바른 사용을 권고하기 위한 기준을 마련하여 고시할 수 있다.
- 제6조(비법정단위의 사용금지 등) ① 누구든지 법정단위 외의 단위(이하 "비법정단위"라 한다)로 표시된 계량기나 상품을 제조하거나 수입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계량기나 상품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1. 수출물품 또는 수출을 위하여 수입하는 물품의 계량에 사용하는 계량기
 - 2. 선박・항공기 또는 군용물품의 계량에 사용하는 계량기
 - 3. 연구・개발에 이용되는 물품의 계량에 사용하는 계량기
 - 4. 수출을 목적으로 하는 계량기나 상품
 - 5. 수출물품의 원료 또는 부품으로서 수입하는 계량기나 상품
 - ② 누구든지 비법정단위를 계량이나 광고에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1. 수출물품 또는 수출을 위하여 수입하는 물품의 계량
 - 2. 선박・항공기 또는 군용 물품의 계량
 - 3. 연구·개발에 이용되는 물품의 계량
 -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누구든지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표시요건을 만족하는 경우 비법정단위를 법정단위와 함께 표시할 수 있다.

- ④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또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는 비법정단위의 사용을 단속하고, 비법정단위를 사용한 자에게는 법정단위의 표시를 명할 수 있다.
- ⑤ 제4항에 따라 법정단위의 표시 명령을 받은 자는 해당 명령을 이행하고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에게 그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 ⑥ 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법정단위 표시 명령 및 결과보고에 관한 절차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한다.

제2장 계량기의 형식승인 및 검정 등

제1절 계량기 제조업의 등록 등

- 제7조(계량기 제조업의 등록 등) ①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계량기 제조업, 계량기 수리업 또는 계량증명업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 1. 계량기 제조업: 계량기를 제조하거나 그가 제조한 계량기를 수리하는 영업
 - 2. 계량기 수리업: 계량기(그가 제조한 계량기는 제외한다)를 수리하는 영업
 - 3. 계량증명업: 계량기로 계량을 하고 그 계량한 값이 진실임을 증명하는 영업
 - ② 제1항에 따라 등록을 하려는 자는 계량기의 제조, 수리 및 증명에 필요한 자체 시설 및 검사설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등록기준을 갖추어야 한다.
 - ③ 제1항제2호에 따른 계량기 수리업의 업무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④ 계량기 제조업 등록을 한 자(이하 "제조업자"라 한다), 계량기 수리업 등록을 한 자(이하 "수리업자"라 한다) 및 계량증명업 등록을 한 자(이하 "계량증명업자"라 한다)는 등록사항이 변경되는 경우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30일 이내에 시·도지사에게 변경사항을 신고하여야 한다.
 - ⑤ 시·도지사는 제4항에 따른 변경신고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신설 2017. 12. 12.>
 - ⑥ 시·도지사가 제5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 또는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을 신고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기간이 연장 또는 재연장된 경우에는 해당 처리기간을 말한다)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본다.<신설 2017. 12. 12.>
- 제8조(계량기의 자체수리) ① 제7조에도 불구하고 시·도지사로부터 자체수리자로 지정받은 자(이하 "자체수리자"라 한다)는 그가 사용하는 계량기를 자체적으로 수리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른 자체수리자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계량기의 수리에 필요한 자체 시설 및 검사설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정기준을 갖추어 시·도지사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 ③ 제1항에 따른 자체수리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④ 자체수리자는 지정사항이 변경된 경우 30일 이내에 시・도지사에게 변경사항을 신고하여야 한다.
 - ⑤ 시·도지사는 제4항에 따른 변경신고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신설 2017. 12. 12.>
 - ⑥ 시·도지사가 제5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 또는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을 신고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기간이 연장 또는 재연장된 경우에는 해당 처리기간을 말한다)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본다.<신설 2017. 12. 12.>
 - ⑦ 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신청방법 및 신고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한다.<개정 2017. 12. 12.>

법제처 2 국가법령정보센터

- 제9조(수입업의 신고) ① 계량기의 수입을 업(이하 "계량기 수입업"이라 한다)으로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신고사항을 시·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에 따라 계량기 수입업의 신고를 한 자(이하 "수입업자"라 한다)는 신고사항이 변경된 경우 30일 이내에 시·도지사에게 변경사항을 신고하여야 한다.
 - ③ 시·도지사는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신설 2017. 12. 12.>
 - ④ 시·도지사가 제3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 또는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을 신고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기간이 연장 또는 재연장된 경우에는 해당 처리기간을 말한다)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본다.<신설 2017. 12. 12.>
 - ⑤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신고방법 및 신고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한다.<개정 2017. 12. 12.>
- 제10조(제조업 등록 등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7조에 따른 등록을 하거나 제8조에 따른 지정을 받거나 제9조에 따른 신고를 할 수 없다. <개정 2022. 10. 18.>
 - 1. 피성년후견인
 -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 3. 임원 중에 제1호 및 제2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있는 법인이나 단체
 - 4. 제13조제1항에 따라 등록 또는 지정이 취소되거나 영업소가 폐쇄된 후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다만, 이 조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여 그 등록 또는 지정이 취소되거나 영업소가 폐쇄된 경우는 제외한다.
 - 5. 이 법을 위반하여 징역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날부터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제11조(제조업자 등의 준수사항) ① 제조업자, 수리업자, 계량증명업자, 자체수리자 및 수입업자(이하 "제조업자등 "이라 한다)는 해당 업무와 관련하여 금품을 주고받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정한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② 제조업자, 수리업자 및 자체수리자가 아닌 자는 계량기를 수리해서는 아니 된다.
 - ③ 제조업자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록 관리하며 보존하여야 한다.
 - 1. 제14조에 따른 형식승인 관련 신청서류
 - 2. 계량기 수리 내용 및 검사기록
 - 3. 계량증명을 위한 증명서 및 관련 내용
- 제12조(폐업 등의 신고) ① 제조업자등은 사업을 폐업·휴업하거나 휴업한 사업을 다시 시작할 경우 30일 이내에 그 사실을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신고가 신고서의 기재사항 및 첨부서류에 흠이 없고, 법령 등에 규정된 형식상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신고서가 접수기관에 도달된 때에 신고된 것으로 본다.<신설 2017. 12. 12.>
 - ③ 제1항에 따른 폐업신고를 한 자가 폐업신고 후 6개월 이내에 폐업신고 당시와 동일한 업종에 대하여 제7조, 제8조 및 제9조에 따라 등록, 지정 또는 신고를 한 경우 해당 제조업자등은 폐업신고 전의 제조업자등의 지위를 승계한다.<개정 2017. 12. 12.>
 - ④ 제3항에 따라 제조업자등의 지위를 승계한 자에 대하여는 폐업신고 전의 제조업자등에 대한 행정처분의 효과가 승계된다.<개정 2017. 12. 12.>
 - ⑤ 시·도지사는 제3항에 따라 폐업신고 전의 제조업자등의 지위를 승계한 자에 대하여 폐업신고 전의 위반행위를 사유로 제13조에 따른 등록 또는 지정의 취소, 영업소의 폐쇄 및 업무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개정 2017. 12. 12.>

법제처 3 국가법령정보센터

- ⑥ 시·도지사는 제조업자등이「부가가치세법」제8조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에게 폐업신고를 하거나 관할 세무서장이 사업자등록을 말소한 경우에는 등록, 지정 또는 신고 사항을 직권으로 말소할 수 있다.<개정 2017. 12. 12.>
- ⑦ 시·도지사는 제6항에 따른 직권말소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조업자등의 폐업신고 또는 사업자등록의 말소 여부에 대한 정보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관할 세무서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지체 없이 시·도지사에게 해당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신설 2017. 12. 12.>
- 제13조(등록・지정의 취소 및 업무정지 등) ① 시·도지사는 제조업자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 또는 지정을 취소하거나 영업소의 폐쇄(제조업자등 중 자체수리자 및 수입업자에 대해서만 해당한다) 또는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또는 제2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등록・지정을 취소하거나 영업소의 폐쇄를 명하여야 한다. <개정 2022. 10. 18.>
 -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 지정 또는 신고한 경우
 - 2. 업무정지기간에 업무를 한 경우
 - 3. 제7조제2항에 따른 등록기준에 맞지 아니한 경우
 - 4. 제8조제2항에 따른 지정기준에 맞지 아니한 경우
 - 5. 제9조제1항에 따른 신고사항을 위반하여 영업을 한 경우
 - 6. 제10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다만, 제10조제3호에 해당하게 된 법인이나 단체가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그 사유를 해소한 경우는 제외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세부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절 계량기의 형식승인 등

- 제14조(형식승인) ① 상거래 또는 증명에서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오차관리가 필요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계량기를 제조(외국에서 계량기를 제조하여 대한민국에 수출하는 것을 포함한다)하거나 수입하여 판매하려는 자는 그 계량기를 제조하거나 수입하기 전에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6조제1항에 따라 지정을 받은 형식승인기관으로부터 형식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1. 연구・개발, 선박・항공기, 군용 또는 전시 등을 목적으로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계량기
 - 2. 수출을 목적으로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계량기
 - ② 제1항에 따른 형식승인(이하 "형식승인"이라 한다)의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15조(형식승인의 면제)** ① 제16조제1항 본문에 따른 형식승인기관의 장은 계량기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형식승인 시 형식승인 기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
 - 1. 우리나라와 계량기 형식승인 상호인정에 관한 협정을 체결한 국가의 형식승인기관에서 형식승인을 받은 경우
 - 2. 「산업표준화법」제15조에 따라 제품의 인증을 받은 경우
 - ② 삭제<2022, 10, 18.>
 - ③ 제1항에 따른 형식승인 면제의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한다.<개정 2022. 10. 18.>
- 제16조(형식승인기관의 지정 등)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형식승인 업무를 전문적,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형식승인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 다만, 제18조제1항에 따라 형식승인기관의 지정이 취소된 후 1년이 지나지 아

법제처 4 국가법령정보센터

니한 자를 형식승인기관으로 지정해서는 아니 된다.

- ② 제1항에 따라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 1. 비영리 법인 또는 단체일 것
-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담조직, 시험설비 등을 갖출 것
- 3. 제조업자 및 수입업자로부터 재정적인 지원을 받지 아니하는 등 독립성을 갖출 것
- 4. 계량기와 관련된 분야에서 「국가표준기본법」제23조에 따라 시험기관과 검사기관으로 모두 인정을 받을 것
- ③ 제2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지정을 신청한 자가 제1항 단서에 해당되거나 제2항에 따른 지정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형식승인기관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형식승인기관의 지정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한다.
- **제17조(형식승인기관의 준수사항)** ① 형식승인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1. 형식승인 신청 등 관련 사실을 이해관계자에게 제공하는 행위
 - 2. 형식승인과 관련하여 금품을 주고받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정한 행위
 - 3. 형식승인에 관한 이용자의 요청을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는 행위
 - ② 형식승인기관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록·관리하며 보존하여야 한다.
 - 1. 형식승인 관련 신청 서류
 - 2. 형식승인 관련 시험 검사 결과서
 - 3. 형식승인서
 - 4. 제49조에 따른 형식승인 통계에 관한 보고사항
- 제18조(형식승인기관의 지정 취소 등)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6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형식승인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지정을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또는 제2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형식승인기관으로 지정받은 경우
 - 2. 업무정지기간에 형식승인을 한 경우
 - 3. 형식승인 기준을 위반하여 형식승인을 한 경우
 - 4. 제16조제2항에 따른 지정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된 경우
 - 5. 제17조제1항에 따른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
 - 6. 정당한 사유 없이 형식승인 업무를 하지 아니한 경우
 - ② 제1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세부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③ 형식승인기관의 지정 취소 등의 방법 및 공고 등의 절차에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한다.<신설 2017. 3. 21.>
- 제19조(형식승인의 취소) ① 형식승인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계량기에 대한 형식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형식승인을 취소하여야 한다.
 - 1. 제12조에 따라 제조업자등이 폐업하거나 직권 말소된 경우
 - 2. 제13조에 따라 제조업등의 등록 ㆍ지정이 취소되거나 영업소가 폐쇄된 경우
 - 3.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14조제1항에 따른 형식승인 또는 제21조제1항에 따른 변경승인을 받은 경우

법제처 5 국가법령정보센터

- 4. 형식승인을 받은 후 제조된 계량기가 형식승인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
- 5. 제21조제1항에 따른 변경승인을 받지 아니한 경우
- ② 제1항에 따른 형식승인 취소의 세부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20조(형식승인번호의 표시 등) ① 제14조제1항에 따라 계량기의 형식승인을 받은 자는 그 계량기에 산업통상자 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형식승인번호를 표시하여야 한다.
 - ② 누구든지 형식승인을 받지 아니한 계량기(형식승인을 받은 후 형식승인이 취소된 경우를 포함한다)에 제1항에 따른 형식승인번호의 표시 또는 이와 유사한 표시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③ 누구든지 형식승인번호의 표시를 훼손해서는 아니 된다.
 - ④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형식승인번호가 표시된 계량기가 형식승인을 받은 구조와 다르게 수리된 경우에는 그 형식승인번호를 삭제하거나 소인(消印)을 하여야 한다. 다만, 수리한 계량기의 성능이 수리 전의 성능과 동일하다고 제25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검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⑤ 제1항 및 제4항에 따른 형식승인번호의 표시 및 표시 제거 등에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한다.
- **제21조(형식승인의 변경 등)** ① 형식승인을 받은 자는 계량기의 계량성능에 영향을 미치는 구조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 형식승인기관으로부터 변경승인을 받아야 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변경승인의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한다.
- 제22조(제품결함의 시정) ① 제조업자, 수리업자 또는 수입업자는 계량기의 허용오차에 영향을 미치는 등 대통령 령으로 정하는 중대한 결함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공개하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는 방 법과 절차에 따라 지체 없이 해당 계량기의 수거・파기・수리・교환・환급・개선조치 또는 제조・유통의 금지, 그 밖에 필요한 조치(이하 "수거등"이라 한다)를 하여야 한다.
 -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결함 사실의 공개 또는 수거등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 제조업자, 수리업자 또는 수입업자에게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거등을 명하여야 한다.
 - 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조업자, 수리업자 또는 수입업자가 제2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직접 해당 계량기의 수거등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수거등에 사용되는 비용을 해당 제조업자, 수리업자 또는 수입업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 ④ 제조업자, 수리업자 또는 수입업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시정조치를 하는 경우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정조치 계획과 진행상황 또는 그 결과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3절 계량기의 검정 등

- 제23조(검정) ①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는 형식승인을 받은 계량기(제15조제1항에 따라 형식승인을 면제받은 계량기를 포함한다)에 대하여 제26조에 따른 검정기관으로부터 검정을 받아야 한다. 다만, 제26조제3항에 따라 자체검정을 받은 계량기는 제외한다. <개정 2022. 10. 18.>
 - ② 제1항에 따른 검정의 기준 및 검정유효기간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③ 제1항에 따른 검정의 신청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한다.
- **제24조(재검정)** ① 제23조제1항에 따라 검정을 받은 계량기 중 검정유효기간이 있는 계량기를 사용하는 자는 검정 유효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재검정을 받아야 한다.

법제처 6 국가법령정보센터

- ② 제1항에 따른 재검정의 기준 및 재검정유효기간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③ 제1항에 따른 재검정의 신청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한다.
- 제25조(수리한 계량기의 재검정) ① 제24조제1항 및 제30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검정유효기간이 만료되기 전 또는 정기검사 기일이 되기 전에 수리한 계량기를 사용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부터 재 검정을 받아야 한다.
 - 1. 제26조에 따른 검정기관
 - 2. 검정요원, 검정설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지방자치단체
 - ② 제1항에 따른 재검정의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③ 제1항에 따른 재검정유효기간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④ 제1항에 따른 재검정의 신청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한다.
- 제26조(검정기관의 지정 등)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23조부터 제25조까지의 검정 및 재검정 업무를 전문적 ·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검정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 다만, 제28조제1항에 따라 검정기관의 지정이 취소된 후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를 검정기관으로 지정해서는 아니 된다.
 - ② 제1항에 따라 검정기관으로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 게 신청하여야 한다.
 - 1. 비영리 법인 또는 단체일 것
 - 2. 검정요원, 검정설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출 것
 - 3. 제조업자 및 수입업자로부터 재정적인 지원을 받지 아니하는 등 독립성을 갖출 것
 - 4. 계량기와 관련된 분야에서 「국가표준기본법」제23조에 따라 검사기관으로 인정을 받을 것
 -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조업자(외국에서 계량기를 제조하여 대한민국에 수출하는 자를 포함한다) 중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가 신청한 경우 계량기 검정을 할 수 있는 사업자(이하 "자체검정사업자"라 한다)로 지정하여 그가 제조한 계량기를 직접 검정(제24조 및 제25조에 따른 재검정은 제외한다)하게 할 수 있다. 다만, 제28조제1항에 따라 자체검정사업자의 지정이 취소된 후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를 자체검정사업자로 지정해서는 아니 된다.
 - 1. 검정요원, 검정설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출 것
 - 2. 계량기와 관련된 분야에서「국가표준기본법」제23조에 따라 검사기관으로 인정을 받을 것
 - 3. 최근 2년간 계량기의 검정 불합격률이 1천분의 1이하일 것
 - ④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지정을 신청한 자가 제1항 단서 또는 제3항 단서에 해당되거나 제2항 또는 제3항 본문에 따른 지정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검정기관 또는 자체검정사업자로 지정하여야 한다.
 - ⑤ 검정기관 및 자체검정사업자의 지정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한다.
- 제27조(검정기관 등의 준수사항) ① 검정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1. 검정 신청 등 관련 사실을 이해관계자에게 제공하는 행위
 - 2. 검정 업무와 관련하여 금품을 주고받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정한 행위
 - 3. 검정에 관한 이용자의 요청을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는 행위
 - ② 검정기관의 장 및 자체검정사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록・관리하며 보존하여야 한다.
 - 1. 검정 관련 신청 서류

- 2. 검정 관련 검사 결과서
- 3. 제49조에 따른 검정 통계에 관한 보고사항
- 제28조(검정기관 등의 지정 취소 등)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검정기관 또는 자체검정사업자로 지정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또는 제2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한다.
 -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검정기관 또는 자체검정사업자로 지정을 받은 경우
 - 2. 업무정지기간에 검정을 한 경우
 - 3. 제23조제2항에 따른 검정의 기준을 위반하여 검정을 한 경우
 - 4. 제26조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지정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 5. 제27조제1항에 따른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
 - 6. 정당한 사유 없이 검정 업무를 하지 아니한 경우
 - ② 제1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세부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29조(검정증인의 표시 등)** ① 검정기관, 자체검정사업자 및 시・도지사는 그가 한 검정에 합격한 계량기에 검정 증인(檢定證印)을 표시하고, 계량 오차를 임의로 조작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계량기는 봉인하여야 한다.
 - ② 누구든지 계량기를 변조할 목적으로 제1항에 따른 검정증인이나 봉인을 훼손해서는 아니 된다.
 - ③ 시ㆍ도지사 또는 검정기관의 장은 재검정에 불합격한 계량기에 표시되어 있는 검정증인을 제거하여야 한다.
 - ④ 시·도지사 또는 검정기관의 장은 형식승인번호가 표시된 계량기가 형식승인을 받은 구조와 다르게 제조·수리된 경우에는 표시되어 있는 검정증인을 제거하여야 한다. 다만, 수리한 계량기의 성능이 수리 전의 성능과 같은 수준 이상이라고 제25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검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⑤ 제1항에 따른 검정증인의 표시 및 봉인 등에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한다.

제4절 계량기의 정기검사 등

- 제30조(정기검사) ① 형식승인을 받은 계량기 중 제24조제1항에 따른 재검정 대상 외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계량 기를 사용하는 자는 시·도지사가 2년에 한 번씩 실시하는 정기검사를 받아야 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정기검사의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③ 정기검사의 신청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한다.
 - ④ 시·도지사는 정기검사에 준하는 검사 또는 교정을 받은 계량기 등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계량기에 대하여는 제1항에 따른 정기검사를 면제할 수 있다.
- 제31조(수시검사)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및 시·도지사는 형식승인을 받은 계량기가 검정, 재검정 및 정기검사를 받았는지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수시로 검사할 수 있다.
- 제32조(자체정기검사사업자의 지정 등) ① 제30조에도 불구하고 시·도지사는 정기검사를 할 수 있는 사업자를 지정하여 그가 제작 및 수입하거나 사용하는 계량기를 자체적으로 정기검사하게 할 수 있다. 다만, 시·도지사는 제33조제1항에 따라 자체정기검사사업자 지정이 취소된 후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를 자체정기검사사업자로 지정해서는 아니 된다.
 - ② 제1항에 따라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검사요원, 검사설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추어 시ㆍ도지사에게 지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지정신청의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한다.
- 제33조(자체정기검사사업자의 지정 취소 등) ① 시·도지사는 제32조제1항에 따라 정기검사를 할 수 있는 사업자로 지정을 받은 자(이하 "자체정기검사사업자"라 한다)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자체정기검사사업자로 지정받은 경우
 - 2. 제30조제2항에 따른 정기검사의 기준을 위반하여 검사를 한 경우
 - 3. 제32조제2항에 따른 지정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 ② 제1항에 따라 지정이 취소된 자는 그가 자체적으로 검사한 계량기에 대하여 지정이 취소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시·도지사로부터 정기검사와 동일한 검사를 받아야 한다.
 - ③ 제1항에 따른 지정 취소의 세부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34조(검사증인의 표시 등)** ① 시・도지사 및 자체정기검사사업자는 제30조제1항에 따른 정기검사에 합격한 계량기에 검사증인(檢査證印)을 표시하여야 한다.
 - ② 시·도지사 및 자체정기검사사업자는 정기검사에 불합격한 계량기에 표시되어 있는 검사증인을 제거하여 야 한다.
 - ③ 시·도지사 또는 자체정기검사사업자는 형식승인번호가 표시된 계량기가 형식승인을 받은 구조와 다르게 제조·수리된 경우에는 표시되어 있는 검사증인을 제거하여야 한다. 다만, 수리한 계량기의 성능이 수리 전의 성능과 같은 수준 이상이라고 제25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검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검사증인의 표시 및 제거 등에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한다.

제5절 계량의 일반준수사항

- 제35조(양도 등의 제한)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계량기를 양도·대여하거나 양도·대여하기 위한 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검정증인 또는 검사증인의 표시가 곤란한 계량기로서 질량이 1천밀리그램 이하의 선분동(線分銅)·판상분동(板狀分銅)인 계량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1. 비법정단위가 표시되어 있는 계량기. 다만, 제6조제1항 단서 및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비법정단위로 표시할 수 있는 계량기는 제외한다.
 - 2. 형식승인을 받지 아니한 계량기
 - 3. 형식승인과 다르게 변조된 계량기
 - 4. 제23조제1항 본문에 따른 검정을 받지 아니한 계량기
 - 5. 제23조제2항에 따른 검정유효기간이 지난 계량기
 - 6. 제24조제2항에 따른 재검정유효기간이 지난 계량기
 - 7. 제29조에 따른 검정증인 또는 제34조에 따른 검사증인을 표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표시한 계량기
 - 8. 제38조에 따른 최대허용오차등을 표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표시한 계량기

제36조(사용의 제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계량기를 계량에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 1. 제25조제1항에 따른 수리 후 재검정을 받지 아니한 계량기
- 2. 제30조제1항에 따른 정기검사를 받지 아니한 계량기
- 3. 제35조에 따라 양도ㆍ대여하거나 양도ㆍ대여하기 위한 광고가 제한되는 계량기
- 4. 제37조제1항에 따른 사용오차를 초과하는 계량기

- **제37조(정확히 계량하여야 할 의무 등)** ① 계량기를 사용하는 자는 계량을 정확하게 하여야 하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용오차를 초과하여 계량해서는 아니 된다.
 - ② 수평장치가 있는 계량기를 사용할 때에는 수평을 유지하여야 하며, 영점(零點) 조정장치가 있는 계량기는 영점을 조정한 후 사용하여야 한다.
 - ③ 누구든지 계량값을 조작할 목적으로 계량기를 변조하거나 변조된 계량기를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 ④ 누구든지 형식승인을 거짓으로 받거나 형식승인과 다르게 변조된 사실을 알고 해당 계량기를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 ⑤ 누구든지 검정증인 또는 검사증인이 거짓으로 표시된 사실을 알고 해당 계량기를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 **제38조(최대허용오차등의 표시)** 제조업자, 수리업자 및 수입업자는 제조, 수리 또는 수입한 계량기에 최대허용오차 와 그 밖에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하 "최대허용오차등"이라 한다)을 표시하여야 한다.

제6절 측정기기의 교정

- 제39조(측정기기의 교정) ① 「국가표준기본법」에 따른 측정기기 중 상거래 또는 증명에 사용하기 위하여 교정이 필요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정대상 측정기기를 사용하려는 자는 같은 법 제14조제3항에 따른 국가교정업무 전담기관으로부터 같은 법 제3조제16호에 따른 교정을 받아야 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교정대상 측정기기를 사용하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정주기가 끝나기 전에 다시 교정을 받아야 한다.
 -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교정 및 재교정의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40조(측정기기의 자율교정)** ① 교정대상 측정기기 사용자가 자율적으로 교정할 필요가 있는 자율교정 측정기기 의 종류를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자율교정 측정기기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교정주기, 교정절차 등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제3장 정량표시상품의 관리

- 제41조(정량표시상품) ① 정량표시상품을 제조, 수입, 가공 또는 판매하는 자(이하 "정량표시상품사업자"라 한다)는 정량표시상품의 용기 또는 포장에 정량표시상품사업자의 상호, 성명 및 정량을 표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상품에 표시된 양과 실제 내용량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허용오차를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정량의 표시방법 및 검사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42조(정량표시 위반의 시정)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제41조제1항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 정량의 표시를 명하거나 표시의 정정을 요구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라 정량표시 명령 또는 표시의 정정을 요구받은 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에게 개선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정량표시 명령 또는 표시의 정정 및 개선 결과보고 등에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한다.
- 제43조(정량표시상품의 자기적합성선언) ① 정량표시상품사업자는 정량표시상품에 대하여 제44조제1항의 적합성확인기관으로부터 정량표시상품이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갖추었는지를 확인(이하 "적합성확인"이라 한다)받아 그 상품의 정량표시 오차가 그 기준에 적합함을 선언(이하 "자기적합성선언"이라 한다)할 수 있다.

법제처 10 국가법령정보센터

- ② 자기적합성선언을 한 정량표시상품사업자(이하 "적합성사업자"라 한다)는 자기적합성선언일 이후 3년마다 자기적합성선언 대상 정량표시상품이 계속하여 제1항의 기준을 유지하고 있는지를 제44조제1항의 적합성확인 기관으로부터 확인을 받아야 한다.
- ③ 자기적합성선언의 확인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한다.
- 제44조(적합성확인기관의 지정 등)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정량표시 오차의 적합성확인 업무를 전문적 ·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적합성확인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이하 "적합성확인기관"이라 한다)을 지정할 수 있다. 다만, 제46조제1항에 따라 적합성확인기관의 지정이 취소된 후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를 적합성확인기관으로 지정해서는 아니 된다.
 - ② 제1항에 따라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적합성확인 요원, 정량검사 설비 등을 갖추어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 ③ 제2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지정을 신청한 자가 제1항 단서에 해당되거나 제2항에 따른 지정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적합성확인기관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적합성확인기관의 지정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한다.
- **제45조(적합성확인기관의 준수사항)** ① 적합성확인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 는 아니 된다.
 - 1. 자기적합성선언 신청서 등 관련 사실을 이해관계자에게 제공하는 행위
 - 2. 적합성확인과 관련하여 금품을 주고받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정한 행위
 - 3. 적합성확인에 대한 이용자의 요청을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는 행위
 - ② 적합성확인기관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록 관리하며 보존하여야 한다.
 - 1. 자기적합성선언 관련 신청서류
 - 2. 자기적합성 확인서
- 제46조(적합성확인기관의 지정 취소 등)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적합성확인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및 제2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적합성확인기관으로 지정받은 경우
 - 2. 업무정지기간에 적합성확인 업무를 한 경우
 - 3. 제44조제2항에 따른 지정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 4. 제45조제1항에 따른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
 - 5. 정당한 사유 없이 적합성확인 업무를 하지 아니한 경우
 - 6. 제43조제1항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부합하지 아니하게 자기적합성 확인을 한 경우
 - ② 제1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세부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47조(자기적합성선언의 표시) ① 적합성사업자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정량표시상품의용기 또는 포장에 적합성확인 기준을 준수하고 있음을 나타내는 표시(이하 "자기적합성선언표시"라 한다)를 할수 있다. 다만, 제48조에 따라 자기적합성선언표시의 제거 명령을 받은 적합성사업자는 그 처분을 받은 날부터 1년간 같은 품목에 대하여 자기적합성선언을 할 수 없다.
 - ② 적합성사업자가 아닌 자는 자기적합성선언표시 또는 이와 유사한 표시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법제처 11 국가법령정보센터

- ③ 자기적합성선언표시의 방법은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한다.
- 제48조(자기적합성선언표시의 제거) ① 적합성확인기관은 자기적합성선언 대상 정량표시상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기적합성선언표시의 제거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및 제4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표시를 제거하도록 명하여야 한다.
 -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자기적합성 확인을 받은 경우
 - 2. 자기적합성 확인을 받은 내용과 다르게 자기적합성선언표시를 한 경우
 - 3. 적합성확인기관으로부터 제43조제2항에 따른 확인을 받지 아니한 경우
 - 4. 제47조제2항을 위반하여 적합성사업자가 아닌 자가 자기적합성선언표시 또는 이와 유사한 표시를 한 경우
 - ② 제1항에 따라 자기적합성선언표시의 제거명령을 받은 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및 적합성확인기관의 장에게 표시제거의 계획 및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자기적합성선언표시의 제거 및 보고에 관한 절차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한다.

제4장 사후관리

- **제49조(보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비법정단위의 단속현황, 계량기 제조업 등록현황, 형식승인 및 검정 통계, 교정대상 측정기기 교정이력, 적합성 확인현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련 자료를 산업통상자 원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1. 시 도지사
 - 2. 형식승인기관의 장
 - 3. 검정기관의 장
 - 4. 자체검정사업자
 - 5. 자체정기검사사업자
 - 6. 적합성확인기관의 장
 - 7. 「국가표준기본법」제14조제3항에 따른 국가교정업무 전담기관의 장
- 제50조(조사 등)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및 시·도지사는 비법정단위의 단속, 교정대상 측정기기의 교정이력 확인, 정량표시상품의 정량관리 및 불법계량기의 유통방지 등을 위하여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다음 각 호의 조사 업무를 하게 할 수 있다.
 - 1. 제조업자등, 자체정기검사사업자, 정량표시상품사업자, 계량을 수행하는 자 및 계량기를 사용하는 자에 대한 자료의 제출 요구
 - 2. 사업장, 점포, 영업소, 사무소, 공장, 창고나 그 밖에 필요한 장소에 출입하여 계량기의 훼손·조작 여부 확인 등 위반사항에 대한 검사 및 질문
 - 3. 유통 중인 계량기 또는 정량표시상품 등에 대한 시판품의 조사
 - ② 제1항에 따라 사업자의 사업장, 점포, 영업소, 사무소, 공장, 창고나 그 밖에 필요한 장소에 출입하여 검사 또는 질문을 하게 하는 경우에는 검사 7일 전까지 검사 일시, 이유 및 내용 등을 포함한 검사계획을 검사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 또는 사전에 통지하면 증거인멸 등으로 검사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③ 제1항에 따라 출입, 검사 또는 질문을 하는 공무원(이하 "계량검사공무원"이라 한다)은 현장에서 검사하기 어려운 계량기 또는 정량표시상품이 있을 때에는 그 소유자나 점유자에게 기간을 정하여 지정한 장소에 이를 제출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 ④ 제1항에 따라 출입하거나 검사·질문하는 계량검사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보여주어야 한다.

법제처 12 국가법령정보센터

- ⑤ 보고 및 검사의 절차, 검사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한다.
- **제51조(위반사실의 공표)**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위반행위와 관련된 사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내용을 공표할 수 있다.
 - 1. 제22조제1항에 따른 중대한 결함이 발견되어 시정조치를 요구하였으나 조치를 하지 아니한 경우
 - 2. 제37조제3항을 위반하여 계량값을 조작할 목적으로 계량기를 변조하거나 변조된 계량기를 사용하는 경우
 - ② 제1항에 따른 공표대상의 세부기준, 공표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52조(부정계량기의 처리) ① 시·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계량기가 계량에 사용되는 경우에는 검정증인 또는 검사증인 표시를 제거하고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사용중지 표시증을 붙여야 한다. 다만, 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3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표시의 개선을 명할 수 있다.
 - 1. 제7조제1항에 따른 계량기 제조업·계량기 수리업 등록을 하지 아니하거나 제8조제1항에 따른 자체수리자로 지정을 받지 아니한 자가 제조 또는 수리한 계량기
 - 2. 제9조에 따른 계량기 수입업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가 수입한 계량기
 - 3. 제36조 각 호에 따라 사용이 제한되는 계량기
 - 4. 제38조에 따른 최대허용오차등의 표시 의무를 위반한 계량기
 - ② 누구든지 제1항에 따른 사용중지 표시증을 임의로 제거하거나 제거한 계량기를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 ③ 제1항에 따른 검정증인, 검사증인의 표시 제거 및 사용중지 표시증 부착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 자원부령으로 정한다.
- **제53조(사법경찰권)** 계량검사공무원은 이 법에 규정된 범죄에 관하여는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한다.
- 제54조(소비자감시원)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및 시·도지사는 효율적인 계량관리를 위하여 계량에 관한 지식이 있는 제65조제1항에 따른 한국계량측정협회 및 「소비자기본법」제29조에 따라 등록한 소비자단체의 임원 및 직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위촉한 자를 소비자감시원(이하 "감시원"이라 한다)으로 위촉하고, 직무수행과 관련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라 위촉된 감시원의 직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1. 비법정단위의 사용 여부 확인
 - 2. 재검정 및 정기검사 여부 확인
 - 3. 정기검사 및 단속 업무의 보조
 - 4. 그 밖에 계량기에 관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 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및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위촉된 감시원에게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증표를 발급하여야 한다.
 - ④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및 시・도지사는 감시원에게 직무수행에 필요한 교육을 하여야 한다.
 - ⑤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및 시·도지사는 위촉된 감시원이 심신장애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 ⑥ 감시원의 활동과 관련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한다.
- **제55조(과징금)**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8조, 제28조 또는 제46조에 따라 업무정지를 명하여야 할 경우로서 업무정지 명령이 해당 업무 이용자에게 심한 불편을 초래하는 경우 그 처분을 갈음하여 3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및 시·도지사는 제37조제3항에 따라 계량값을 조작할 목적으로 계량기를 변조하거나 변조된 계량기를 사용한 자에게 2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법제처 13 국가법령정보센터

- ③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위반행위의 종류 및 위반정도 등에 따른 과징금의 금액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④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과징금 부과처분을 받은 자가 해당 과징금을 기한까지 내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 제56조(신고포상금)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및 시·도지사는 제35조제3호에 따른 변조된 계량기를 사용한 자 또는 제37조제3항에 따라 계량값을 조작할 목적으로 계량기를 변조한 자를 신고한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금을 줄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른 신고포상금 지급의 기준, 방법과 절차 및 구체적인 지급액 등에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 부령으로 정한다.

제5장 계량 산업의 육성

- 제57조(계량 산업의 육성 지원)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계량 산업의 건전한 발전과 경쟁력 향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 1. 계량 산업 정책, 제도의 조사 및 연구에 관한 사업
 - 2. 계량 산업 관련 창업지원에 관한 사업
 - 3. 계량 산업 전문기술인력의 양성 사업
 - 4. 계량 사업자의 해외진출 지원에 관한 사업
 - 5. 제60조에 따른 국제협력사업 지원에 관한 사업
 - 6. 계량기의 형식승인 및 검정 기술기준 개발에 관한 사업
 - 7. 형식승인 및 검정 평가기술의 연구 · 개발에 관한 사업
 - 8. 그 밖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계량 산업의 육성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사업자, 단체 및 기관에 대하여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58조(시범사업의 실시)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57조제1항제2호부터 제6호까지에 따른 연구·개발 결과 등을 계량 산업 관련 기업에 지원하고 관련 산업과의 연계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계량 기술 등의 이용·보급 등에 관한 시범사업을 할 수 있다.
 -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계량 산업 관련 사업자, 단체 및 기관을 행정적 재정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
 - ③ 제1항에 따른 시범사업의 계획 수립 및 추진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59조(실태조사)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57조제1항에 따른 사업추진에 필요한 기초자료를 확보하기 위하여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실태를 조사할 수 있다.
 - 1. 국내외 계량 산업의 현황에 관한 사항
 - 2. 계량 기술의 개발 및 보급 현황에 관한 사항
 - 3. 계량 관련 전문기술인력의 현황 및 이력 등에 관한 사항
 - 4. 계량 기술의 상품화 등에 관한 사항
 - 5. 그 밖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계량 산업 관련 사업자, 단체 및 기관의 장에게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 등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제출 등을 요청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협조하여야 한다.

법제처 14 국가법령정보센터

- **제60조(국제협력사업의 지원 등)**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계량기 관련 사업자에 대한 수출지원 및 기술개발 촉진 등을 위하여 외국 정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단체 등과 협력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 1. 계량 기술의 상품화를 위한 국제 공동 연구
 - 2. 계량 관련 기술정보의 교류
 - 3. 계량에 관한 국제상호인정협정 추진을 위한 활동
 - 4. 그 밖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계량 산업 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61조(계량정보의 종합관리 등)**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과 관련된 계량정보의 효율적 관리 및 기업의 신기술 계량기 개발 지원 등을 위하여 계량종합관리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다.
 - 1. 제7조제1항에 따른 계량기 제조업의 등록 등에 관한 사항
 - 2. 형식승인 이력현황
 - 3. 제23조제1항의 검정, 제24조제1항의 재검정, 제25조제1항의 수리한 계량기의 재검정 현황
 - 4. 제30조제1항의 정기검사 현황
 - 5. 제39조제1항의 교정대상 측정기기의 교정 이력현황
 - 6. 적합성확인을 받은 상품 및 적합성사업자 현황
 - 7. 제50조제1항제3호에 따른 시판품 조사 결과
 -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필요한 경우 제1항에 따른 계량정보를 관계 행정기관 및 소비자 등에게 제공할 수 있다. 다만, 「개인정보 보호법」제2조제1호에 따른 개인정보에 관한 사항은 제외한다.
 - ③ 제1항에 따른 계량종합관리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한다.
- 제62조(계량정보의 요청 등)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61조에 따른 계량정보의 종합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 1. 제조업자, 수리업자, 계량증명업자, 자체수리자 및 수입업자
 - 2. 제24조제1항에 따른 재검정을 받아야 하는 자
 - 3. 제65조제1항에 따른 한국계량측정협회의 장
 - ② 제1항에 따른 계량정보의 요청 절차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한다.

제6장 보칙

- 제63조(지위승계)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그가 등록하거나 지정받거나 신고한 사업의 전부를 양도하거나 사망하였을 때 또는 법인이 합병하였을 때에는 양수인・상속인 또는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에 의하여 설립되는 법인은 등록업자, 신고업자 및 지정기관 또는 지정사업자의 지위를 승계한다.
 - 1. 제조업자등
 - 2. 제16조제1항 본문에 따른 형식승인기관의 장
 - 3. 제26조제1항 본문에 따른 검정기관의 장
 - 4. 자체검정사업자
 - 5. 자체정기검사사업자
 - 6. 적합성사업자
 - 7. 적합성확인기관의 장
 - ② 제1항에 따라 등록업자, 신고업자 및 지정기관 또는 지정사업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는 지위를 승계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법제처 15 국가법령정보센터

- 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제2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신설 2017. 12. 12.>
- ④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제3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 또는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을 신고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기간이 연장 또는 재연장된 경우에는 해당 처리기간을 말한다)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본다.<신설 2017. 12. 12.>
- ⑤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지위승계에 필요한 신청방법 및 신고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한다.<개정 2017, 12, 12.>
- **제64조(계량검사공무원의 인사관리)** 시·도지사는 계량 관련 업무의 전문성과 연속성을 확보하고 업무의 신뢰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계량검사공무원의 보직 등 필요한 인사관리 기준을 정하여 운용하여야 한다.
- 제65조(한국계량측정협회) ① 제조업자, 수리업자, 계량증명업자 및「국가표준기본법」제14조제3항에 따라 국가교 정업무 전담기관으로 지정받은 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한국계량측정협회(이하 "협회"라 한다)를 설립할 수 있다.
 - ② 협회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 1. 계량 산업의 발전 및 측정의 정밀도 향상을 위한 지도, 조사, 통계관리 및 홍보 등에 관한 사업
 - 2. 계량・측정 산업의 전문기술인력 양성 사업
 - 3. 계량기의 기술기준 및「산업표준화법」제27조에 따른 단체표준의 개발・보급에 관한 사업
 - 4. 「국가표준기본법」제23조에 따른 시험・검사기관의 인정에 관한 사업
 - 5. 계량 측정 관련 국제기구 및 외국 관련 단체와의 협력 증진에 관한 사업
 - 6. 계량기 사후관리 및 비법정단위 사용 단속 업무 지원에 관한 사업
 - 7. 정량표시상품의 시판품 조사
 - 8. 그 밖에 계량과 관련된 사업으로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위탁하거나 지정하는 사업
 - ③ 협회는 법인으로 한다.
 - ④ 협회의 설립, 운영 및 감독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66조(청문)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 1. 제18조제1항에 따른 형식승인기관 지정의 취소 및 업무의 정지
 - 2. 삭제 < 2022. 10. 18.>
 - 3. 제28조제1항에 따른 검정기관 또는 자체검정사업자 지정의 취소 및 업무의 정지
 - 4. 제46조제1항에 따른 적합성확인기관 지정의 취소 및 업무의 정지
 - 5. 제16조제2항, 제26조제2항 · 제3항 또는 제44조제2항에 따른 형식승인기관, 검정기관, 자체검정사업자 또는 적합성확인기관 지정신청의 거부
 - ② 시·도지사는 제13조 및 제33조제1항에 따른 등록·지정을 취소하거나 영업소의 폐쇄를 명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 ③ 형식승인기관의 장은 제19조제1항에 따라 형식승인의 취소를 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신설 2022. 10. 18.>
 - ④ 적합성확인기관의 장은 제48조제1항에 따라 자기적합성선언표시의 제거를 명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신설 2022. 10. 18.>
- **제67조(수수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내야한다.

- 1. 제7조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하려는 자
- 2. 제8조제2항에 따른 지정을 받으려는 자
- 3. 제9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수입업의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하려는 자
- 4. 형식승인 또는 제21조제1항에 따른 변경승인을 받으려는 자
- 5. 제16조제1항에 따른 형식승인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
- 6. 제23조제1항 또는 제24조제1항에 따른 검정 또는 재검정을 받으려는 자
- 7. 제25조제1항에 따른 수리한 계량기의 재검정을 받으려는 자
- 8. 제26조제1항에 따른 검정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
- 9. 자체검정사업자로 지정받으려는 자
- 10. 제30조제1항에 따른 정기검사를 받으려는 자
- 11. 자체정기검사사업자로 지정받으려는 자
- 12. 제39조 및 제40조에 따른 교정을 받으려는 자
- 13. 제43조제1항에 따라 적합성확인기관으로부터 적합성확인을 받으려는 자
- 14. 적합성확인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

제68조(권한의 위임) ① 이 법에 따른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시·도지사 또는 소속 기관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 ② 이 법에 따른 시·도지사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시장·군수·자치구의 구청 장 또는 소속 기관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 ③ 제1항에 따라 위임받은 시·도지사의 권한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시장·군수·자치구의 구청장 또는 소속 기관의 장에게 재위임할 수 있다.

제69조(업무의 위탁) ① 이 법에 따른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및 시·도지사의 업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및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위탁받는 기관, 업무의 내용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제70조(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형법」제129조부터 제133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 1. 제16조에 따라 형식승인 업무에 종사하는 형식승인기관의 임직원
- 2. 제26조에 따라 검정 및 재검정 업무에 종사하는 검정기관의 임직원
- 3. 제44조에 따라 적합성확인 업무에 종사하는 적합성확인기관의 임직원
- 4. 제54조에 따라 위촉된 감시원
- 5. 제69조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로부터 위탁받은 업무에 종사하는 법인 또는 단체의 임 직원

[전문개정 2022, 10, 18.]

제7장 벌칙

제71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並科)할 수 있다.

1. 제35조제3호를 위반하여 형식승인과 다르게 변조된 계량기를 양도·대여하거나 양도·대여하기 위하여 광고한 자

법제처 17 국가법령정보센터

- 2. 제36조제3호를 위반하여 양도·대여 및 양도·대여하기 위한 광고가 제한되는 계량기(제35조제3호에 따라 형식승인과 다르게 변조된 계량기를 말한다)를 사용한 자
- 3. 제37조제3항을 위반하여 계량값을 조작할 목적으로 계량기를 변조하거나 변조된 계량기를 사용한 자
- 4. 제37조제4항을 위반하여 형식승인과 다르게 변조된 사실을 알고 해당 계량기를 사용한 자
- 5. 제52조제2항을 위반하여 사용중지 표시증을 임의로 제거하거나 제거한 계량기를 사용한 자

제72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 1. 제7조제1항을 위반하여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계량기를 제조 또는 수리한 자
- 2. 제8조제1항을 위반하여 자체수리자로 지정받지 아니하고 계량기를 수리한 자
- 3. 제9조제1항을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계량기를 수입한 자
- 4. 제20조제2항을 위반하여 형식승인을 받지 아니한 계량기(형식승인을 받은 후 형식승인이 취소된 경우를 포함한다)에 형식승인번호를 표시하거나 이와 유사한 표시를 한 자
- 5. 제20조제3항을 위반하여 형식승인번호의 표시를 훼손한 자
- 6. 제29조제2항을 위반하여 계량기를 변조할 목적으로 검정증인이나 봉인을 훼손한 자
- 7. 제32조제1항을 위반하여 자체정기검사사업자로 지정을 받지 아니하고 계량기를 자체적으로 정기검사한 자
- 8. 제35조제2호를 위반하여 형식승인을 받지 아니한 계량기를 양도·대여하거나 양도·대여하기 위하여 광고 한 자
- 9. 제35조제4호를 위반하여 검정을 받지 아니한 계량기를 양도 대여하거나 양도 대여하기 위하여 광고한 자
- 10. 제35조제7호를 위반하여 검정증인 또는 검사증인이 표시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표시된 계량기를 양도 ·대여하거나 양도·대여하기 위하여 광고한 자
- 11. 제36조제3호를 위반하여 양도·대여하거나 양도·대여하기 위한 광고가 제한되는 계량기(제35조제2호의 형식승인을 받지 아니한 계량기를 말한다)를 사용한 자
- 12. 제36조제3호를 위반하여 양도·대여하거나 양도·대여하기 위한 광고가 제한되는 계량기(제35조제4호의 검정을 받지 아니한 계량기를 말한다)를 사용한 자
- 13. 제36조제3호를 위반하여 양도·대여하거나 양도·대여하기 위한 광고가 제한되는 계량기(제35조제7호의 검정증인 또는 검사증인을 표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표시한 계량기를 말한다)를 사용한 자
- 14. 제37조제4항을 위반하여 형식승인을 거짓으로 받은 사실을 알고 해당 계량기를 사용한 자
- 15. 제37조제5항을 위반하여 검정증인 또는 검사증인이 거짓으로 표시된 사실을 알고 해당 계량기를 사용한 자
- 16. 제47조제2항을 위반하여 자기적합성선언표시 또는 이와 유사한 표시를 한 자

제73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 1. 제6조제1항을 위반하여 비법정단위로 표시된 계량기를 제조하거나 수입한 자
- 2. 제6조제4항을 위반하여 법정단위 표시 명령 또는 제42조제1항에 따른 정량표시 명령 또는 표시의 정정요구 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
- 3. 제7조제1항을 위반하여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계량증명업을 한 자
- 4. 제22조제2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 5. 제38조를 위반하여 최대허용오차등을 표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표시한 자
- 6. 제41조제1항을 위반하여 정량을 표시하지 아니하거나 상품에 표시된 양과 실제량이 허용오차를 초과하여 표시한 자

법제처 18 국가법령정보센터

- 7. 제48조제1항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여 자기적합성선언표시를 제거하지 아니한 자
- 제74조(미수범) 제71조제1호·제2호, 제72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 같은 조 제9호 및 제10호에 따른 죄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 제75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71조부터 제74조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76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22. 10. 18.>

- 1. 제6조제1항을 위반하여 비법정단위로 표시된 상품을 제조하거나 수입한 자
- 2. 제22조제1항을 위반하여 계량기의 결함사실을 공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공개한 자
- 3. 제35조제1호를 위반하여 비법정단위가 표시된 계량기를 양도·대여하거나 양도·대여하기 위하여 광고한 자
- 4. 제36조제3호를 위반하여 양도・대여하거나 양도・대여하기 위한 광고가 제한되는 계량기(제35조제1호 본 문의 비법정단위가 표시되어 있는 계량기를 말한다)를 사용한 자
- 5. 제36조제4호를 위반하여 사용오차를 초과하는 계량기를 사용한 자
- 6. 제37조제1항을 위반하여 사용오차를 초과하여 계량한 자
-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개정 2022. 10. 18.>
- 1. 제6조제2항을 위반하여 비법정단위를 계량에 사용하거나 광고에 사용한 자
- 2. 제6조제5항 또는 제42조제2항을 위반하여 결과보고를 하지 아니한 자
- 3. 제7조제4항, 제8조제4항 및 제9조제2항을 위반하여 변경사항의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11조제3항을 위반하여 관련 기록을 보존하지 아니한 자
- 5. 제12조제1항을 위반하여 폐업 등의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 6. 제17조제2항을 위반하여 관련 기록을 보존하지 아니한 자
- 7. 제22조제4항 및 제48조제2항에 따른 시정조치 계획, 진행상황 및 결과를 보고하지 아니한 자
- 8. 제24조제1항을 위반하여 검정유효기간이 지난 계량기의 재검정을 받지 아니하고 계량기를 사용한 자
- 9. 제27조제2항을 위반하여 관련 기록을 보존하지 아니한 자
- 10. 제35조제5호 또는 제6호를 위반하여 검정유효기간 또는 재검정유효기간이 지난 계량기를 양도·대여하거나 양도·대여하기 위하여 광고한 자
- 11. 제35조제8호를 위반하여 최대허용오차등을 표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표시한 계량기를 양도·대여하 거나 양도·대여하기 위하여 광고한 자
- 12. 제36조제1호를 위반하여 수리 후 재검정을 받지 아니한 계량기를 사용한 자
- 13. 제36조제2호를 위반하여 정기검사를 받지 아니한 계량기를 사용한 자
- 14. 제36조제3호를 위반하여 양도·대여하거나 양도·대여하기 위한 광고가 제한되는 계량기(제35조제6호의 재검정유효기간이 지난 계량기를 말한다)를 사용한 자
- 15. 제36조제3호를 위반하여 양도·대여하거나 양도·대여하기 위한 광고가 제한되는 계량기(제35조제8호에 따른 계량기를 말한다)를 사용한 자
- 16. 제39조를 위반하여 교정 및 재교정을 받지 아니한 교정대상 측정기기를 사용한 자
- 17. 제41조제1항을 위반하여 정량표시상품의 용기 또는 포장에 정량표시상품사업자의 상호 또는 성명을 표시 하지 아니한 자

법제처 19 국가법령정보센터

- 18. 제45조제2항에 따른 관련 기록을 보존하지 아니한 자
- 19. 제50조제1항에 따른 조사 업무를 거부, 방해 또는 기피한 자
- 20. 제50조제3항을 위반하여 계량기 또는 정량표시상품의 제출요구에 따르지 아니한 자
- 21. 제62조제1항을 위반하여 자료제출을 하지 아니한 자
- 22. 제63조제2항을 위반하여 지위승계의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부과·징수한다.